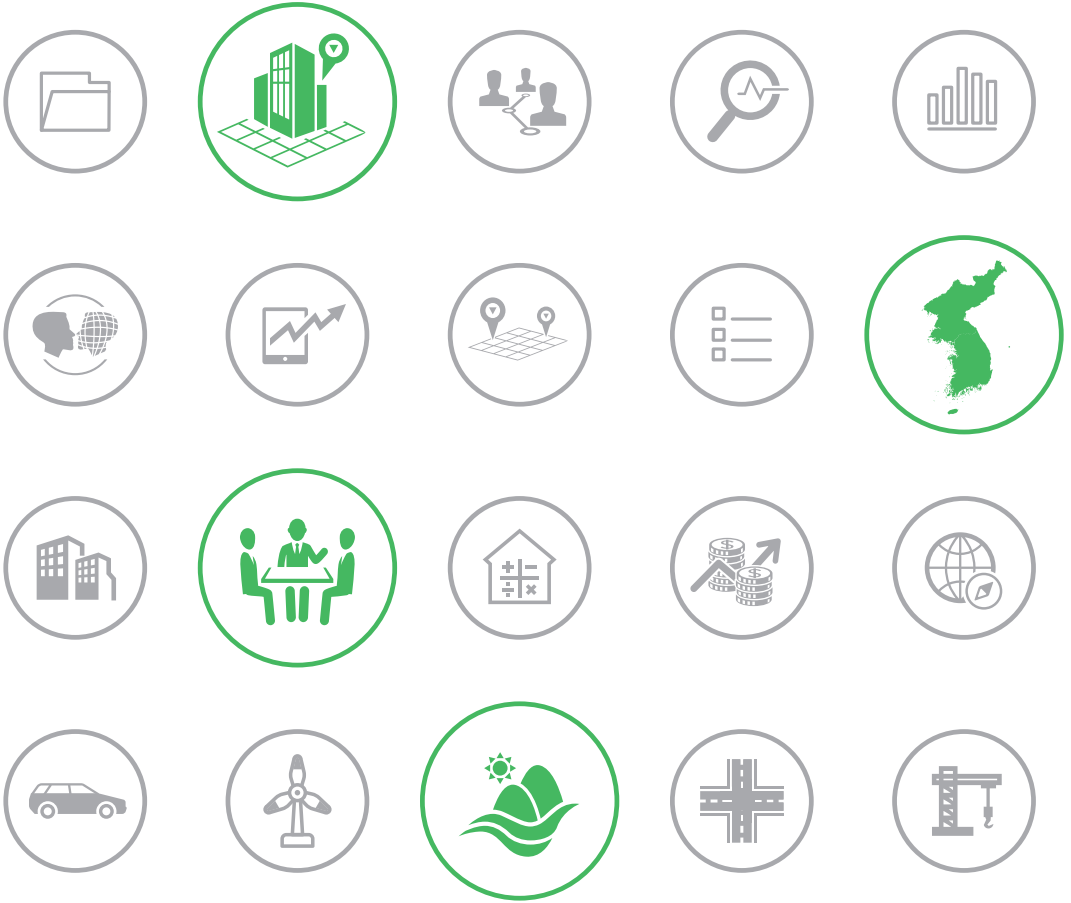




수시 | 23-14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ial Plan Assessment :
Focusing on the adjustment and change of the assesment target plan

김명한, 홍사흠, 유현아

수시 23-14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ial Plan Assessment :
Focusing on the adjustment and change of the assesment target plan

김명한, 홍사흠, 유현아

■ 저자

김명한, 홍사흠, 유현아

■ 연구진

김명한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연구책임)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현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구심의위원

류승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기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1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를 유지
- 2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와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추가가 필요한 계획을 검토하는 등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안 마련이 필요
- 3 계획의 질적 제고, 국토관리 기본이념의 내재화, 계획 간 연계성 강화 등 국토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을 확인
- 4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 국토계획 수립현황 조사, 평가 대상 계획 제외 검토, 평가대상 계획 추가 검토, 평가대상 계획 확정의 과정으로 설정
- 5 현재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제외가 필요한 계획을 검토하고 여건 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을 추가하여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안을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1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이 근거 법령의 개정 및 폐지 없이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2 새롭게 수립된 계획이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적합한지 검토하고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3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의 계획수립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 4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확대 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 5 전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평가 절차 간소화 및 평가대상 계획 확대

차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ii
--------------------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4. 연구의 분석 틀	9
5. 연구의 기대효과	10

제2장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성과와 평가대상 계획의 중요성

1. 국토계획평가제도 의의 및 운영 현황	13
2.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	19
3.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	27

제3장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

1. 개요	35
2.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제외	55
3.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추가	66
4.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안 제시	78

제4장 결론

1. 연구 요약 및 결론	97
2. 평가대상 계획 관련 제도 개선방안	99

참고문헌	101
------------	-----

SUMMARY	108
---------------	-----



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4. 연구의 분석 틀	9
5. 연구의 기대효과	10

0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평가대상 계획에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케 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의의를 갖고 있음

-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등 국토관리 기념이념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제도(국토연구원, 2021)

-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 계획평가제도를 통해 도시·군기본계획 130건, 부문별계획 32건, 지역계획 22건 등 총 184건(2022년 12월 기준)에 대하여 국토계획평가 완료(국토교통부, 2012~2022년 연차보고서)

- 국토계획평가제도를 통해 도시·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계획인구 설정 유도, 국토종합계획 및 부문별 상위계획의 주요 내용과 하위계획 간 연계 등을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 정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시기 조정 등이 개선되었으나,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가 유지

- 2018년 12월 기존 6대 평가기준을 4대 평가기준으로 통합하여 정비하였으며,

2017년 2월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등 일부 제도는 개선됨

-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1년이 지났음에도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음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은 제도 도입 이후 종합·지역계획(5개), 기간시설계획(11개), 부문별계획(12개) 등 28개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유지(국토연구원, 2021)
 - 2017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2016년 3월)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이 대상 계획에서 삭제되었으며,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관리 계획 대신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대상 계획으로 포함됨

□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관련된 새로운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 법률 개정 등으로 계획이 폐지되었거나, 법률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수립하지 않는 계획 제외
- 현재 평가대상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계획의 성격상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평가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계획 제외
-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계획 중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획 등을 중심으로 추가
- 위에 언급한 평가대상 계획 조정을 위해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국토계획 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및 시행령 [별표] 등에 대한 개정 필요

□ 국토계획 간 정합성 강화 및 연계체계 개선 등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대상 계획 관련 제도개선 필요

- 국토계획 현황 및 연계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평가대상 계획 간 정합성을 강화하고 연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관련 제도개선 필요

2) 연구 목적

□ 새로운 여건 변화에 맞추어 국토계획평가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현행 평가대상 계획과 최근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계획을 중심으로 국토 계획평가 대상에 적합한 계획에 대한 검토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 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안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검토 대상 계획: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중·장기 법정 계획

□ 시간적 범위: 2012년 5월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이후

□ 내용적 범위

-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성과와 평가대상 계획의 중요성
 -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의의 및 운영 현황 정리
 -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 정리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 제시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
 - 국토계획평가 대상 조정 및 변경 방안 설정

-
- 국토계획의 개념 및 수립 현황 정리
 - 현행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중 근거 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라 삭제된 계획 제외
 - 현재 평가대상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수립하지 않는 계획 또는 평가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계획은 장기적으로 제외 검토
 -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신규 평가대상 계획 추가
 -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조정(안) 제시
 -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안
 - 평가대상 확정을 위한 현행 제도 검토 및 제도적 개선방안 제안

2) 연구 방법

□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문헌조사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문헌 검토

□ 국토계획 수립현황 조사

- 부처별·분야별 관련 법령(예정법령 포함)에 근거한 국토계획 수립현황 조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부처별 소관 법령에 근거한 계획 조사

□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평가대상 국토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국토계획평가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절차적, 기술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그 중,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 바 있으나, 2012년 제도 운영 이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평가대상 계획이 유지되고 있음
 - 이용우 외(2011)는 제도 도입 이전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가대상 계획을 49개로 제안하였으며, 제도 운영 이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8개로 확정됨¹⁾
 - 민성희 외(2018)는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함께 기존의 28개 평가대상 계획의 확대 방안으로 8개 계획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제안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선행연구들은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거나, 평가대상 계획의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하였으나 제도상 변화에 대한 영향은 미미함
- 이 연구는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전 국토에 걸쳐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계획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1) 2012년 5월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당시, 평가대상 계획은 29개였으나, 2017년 관련 법 폐지로 인해 1개 계획이 삭제됨에 따라 평가대상 계획은 28개로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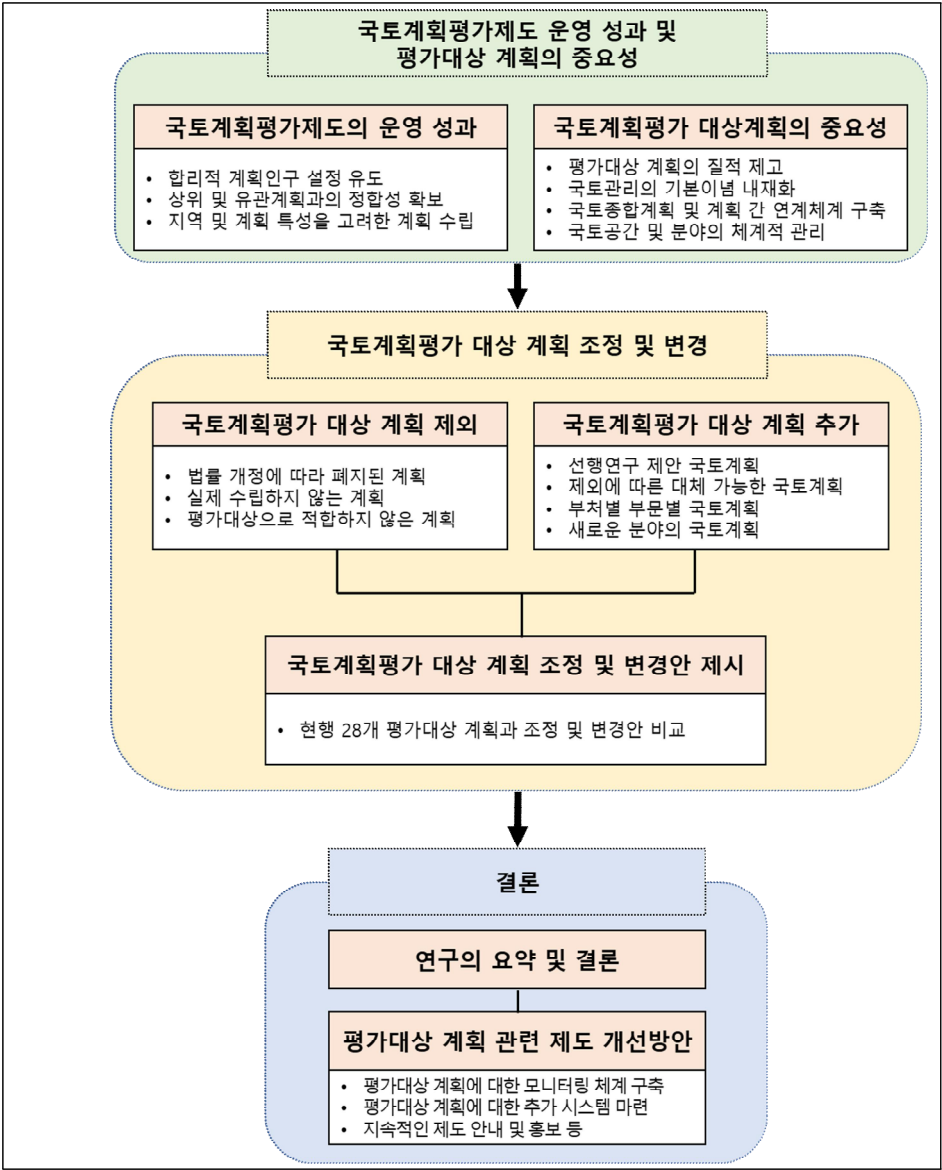
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국토계획평가 시행 방안 연구 - 연구자: 이응우 외 (2011) - 연구목적: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	- 평가제도 관련 문헌조사 - 해외사례 검토 - 국토계획평가기준, 평가대상 계획, 평가방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	- 국토계획 수립현황 및 국토계획평가제도 필요성 제시 - 국내외 평가제도 사례조사 및 시사점 제시 -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적용대상,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제도 도입방안 제시 -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추진방안 제시
	2	- 과제명: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연구자: 민성희 외 (2014) - 연구목적: 국토계획이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가기법 개발 및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내실화 도모	- 국내외 문헌연구 - 외부전문가 활용 -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평가기법 분석 - 국토계획의 유형별 특성 분석 - 평가기법 분석 및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분류 - 국토계획의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 검토를 위한 평가기법 제시 - 평가기법의 국토계획 활용방안 제시
	3	- 과제명: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 연구자: 민성희 외 (2018) - 연구목적: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개선방안 및 평가대상 계획의 확대방안 제시	- 문헌조사 - 실증사례분석 - 계획수립주체, 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6대 평가기준 문제점 및 과제 도출 - 평가기준 개선방안 제시 - 계획 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준 제시 - 평가대상 계획 확대방안 제시 - 제도적 개선방안 제안
본 연구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제도 개선방안 제시	- 문헌조사 - 현황조사 -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성과와 평가대상 계획의 중요성 제시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의 조정·변경 필요성 검토 및 방안 마련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조정(안) 제시 및 제도 개선방안 제안

자료: 저자 작성

4. 연구의 분석 틀

그림 1-1 | 연구의 분석 틀



자료: 저자 작성.

5. 연구의 기대효과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으로 선정된 계획에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 등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내재화하며, 대상 계획의 질적 제고 기대
 - 새로운 여건 변화에 맞게 수립된 국토계획을 평가대상 계획으로 선정함으로써 계획의 기본구상,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검토과정을 통해 계획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을 통하여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정합성을 강화하고 국토계획 간 연계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 국토계획 간 연계체계 개선 및 정합성 강화를 통해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이 국토 전반에 걸쳐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기여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 제고
-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제도적 근거 개정 기여
 -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및 시행령 [별표] 개정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CHAPTER 2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성과와 평가대상 계획의 중요성

1. 국토계획평가제도 의의 및 운영 현황 13
2.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 19
3.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 27

02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성과와 평가대상 계획의 중요성

1. 국토계획평가제도 의의 및 운영 현황

1)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의의

□ 국토계획평가제도의 개요

-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인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하여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제도(국토연구원, 2021)
- 계획수립권자는 국토기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4대 평가기준을 토대로 계획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보완하여 평가대상 계획이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국토연구원, 2021)
 -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4대 평가기준을 통해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

□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성격

- 국토계획평가제도는 사전적 평가, 자체평가, 종합적 평가, 협력적 평가라는 성격을 갖고 있음(국토연구원, 2021)

- 계획의 효과나 성과가 아닌 수립 중인 계획을 사전에 평가
- 계획수립 초기부터 계획수립권자가 주도적으로 자체평가를 수행
-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 등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계획수립권자, 관련분야 전문가, 정부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적으로 평가 수행

□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의의

- 국토계획평가제도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발전과 관리를 위해 국토공간을 다루는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내재화시키고,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계획 간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현황

□ 국토계획평가 운영 실적

- 국토계획평가제도는 2011년 5월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평가대상, 평가기준 등 세부 시행방안을 「국토기본법」 시행령에 마련하고 2012년 5월부터 시행됨 (국토교통부, 2022)
 -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에 의거하여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함
 - 2012년 6월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고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2012년 국토계획평가제도 도입 이후, 2022년 12월까지 총 184건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완료함(국토교통부, 2012~2022년 연차보고서)
- 부문별로는 전체 184건 중 도시·군기본계획 130건, 부문별계획 32건, 지역계획 22건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완료함(국토교통부, 2012~2022년 연차보고서)
- 2023년 기준, 국토계획평가제도는 11년째 접어들었으며,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 중임

-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평가대상 계획 간 정합성 유지, 도시·군기본계획의 합리적 계획인구 설정 유도, 환경친화적인 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기여

표 2-1 | 연도별 국토계획평가 운영 실적(2022년 12월 기준)

연도	소개(건)	부문별계획(건)	지역계획(건)	도시·군기본계획(건)
2012	4	2	1	1
2013	13	4	2	7
2014	5	1	1	3
2015	11	2	-	9
2016	33	6	3	24
2017	14	2	-	12
2018	11	3	-	8
2019	14	2	1	11
2020	17	2	4	11
2021	34	7	9	18
2022	28	1	1	26
총계	184 (100%)	32 (17.4%)	22 (12.0%)	130 (70.6%)

자료: 국토교통부, 2012~2022년 국토계획평가 검토 위탁 연구 연차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국토계획평가 세부 운영 실적

-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실적은 전체 국토계획평가 실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평가대상 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부문별계획은 주로 도로, 철도, 물류, 항공, 항만, 관광, 지하수 등 관련 상위 계획 32건을 대상으로 평가 완료
- 지역계획은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22건을 대상으로 평가완료

표 2-2 | 연도별 국토계획평가 완료 계획(2022년 12월 기준)

(계속)

연도	부문별계획	지역계획	도시·군기본계획
2012 (4건)	담건설장기계획(2012~2021),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12~2021)	전라북도 종합계획 (2012~2020)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계속)

연도	부문별계획	지역계획	도시·군기본계획
2013 (13건)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13~2017),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 (2012~2020),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2030년 당진도시기본계획, 2025년 동두천도시기본계획,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 2030년 세종도시기본계획
2014 (5건)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2010~2019)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2030년 부천도시기본계획, 2030년 여수도시기본계획, 2030년 청주청원도시기본계획
2015 (11건)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2015~2019), 제1차 마린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2015~2019)	-	2030년 창녕군기본계획,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2030년 사천도시기본계획,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30년 아산도시기본계획, 2030년 정읍도시기본계획, 2030년 음성군기본계획
2016 (33건)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2016~2020),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6~2025),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계획 (2016~2021),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6~2020)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변경,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203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203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2030년 함평군기본계획,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 2030년 광양도시기본계획, 203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30년 경산도시기본계획, 2030년 순천도시기본계획, 2030년 무안군기본계획, 2030년 통영도시기본계획, 2030년 안동도시기본계획, 2035년 무주군기본계획, 2030년 나주도시기본계획, 2020년 상주도시기본계획,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203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2030년 파주도시기본계획, 2030년 증평군기본계획, 2025년 제주도시기본계획,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계속)

연도	부문별계획	지역계획	도시·군기본계획
2017 (14건)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18~2027)	-	2030년 진천군기본계획, 2030년 양평군기본계획,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 2020년 영주도시기본계획, 2030년 춘천도시기본계획, 203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2035년 평택도시기본계획,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 2030년 서산도시기본계획,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2030년 담양군기본계획,
2018 (11건)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 (2017~2026),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2018~2022).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2013~2022)	-	2030년 포항도시기본계획, 2035년 가평군기본계획,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 203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2030년 연천군기본계획, 2030년 목포도시기본계획,
2019 (14건)	제2차 마린나항만기본계획(2020~2029)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변경	2030년 성주군기본계획,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 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변경, 2035년 괴산군기본계획,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2020 (17건)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변경(재검토) 수도권정비계획 (2021~2040) 충청남도종합계획 (2021~2040) 충청북도종합계획 (2021~2040)	2035년 해남군기본계획,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2035년 보령도시기본계획, 2035년 삼척도시기본계획, 2030년 영주도시기본계획, 2035년 양주도시기본계획,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2035년 강릉도시기본계획, 2030년 고령군기본계획,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

(계속)

연도	부문별계획	지역계획	도시·군기본계획
2021 (34건)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2021~203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2021~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22~2031)	강원도종합계획 (2021~2040) 경상남도종합계획 (2021~2040)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변경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변경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변경 백두대간권발전 종합계획변경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변경 전라북도종합계획 (2021~2040) 경상북도종합계획 (2021~2040)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2030년 청도군기본계획,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2035년 동두천도시기본계획, 204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2035년 논산도시기본계획, 2035년 남양주시기본계획, 2035년 김포도시기본계획, 2040년 횡성군기본계획, 2035년 평창군기본계획, 2040년 홍천군기본계획, 2035년 양양군기본계획, 2035년 고성군기본계획,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2035년 당진도시기본계획, 2040년 보은군기본계획,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2 (28건)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2022~2031)	전라남도종합계획 (2021~2040)	2040년 금산군기본계획, 2040년 계룡도시기본계획, 2040년 예산군기본계획, 2040년 부여군기본계획, 2035년 화순군기본계획, 2040년 청주도시기본계획,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40년 단양군기본계획, 2040년 양구군기본계획,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 2040년 하남도시기본계획,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2040년 영동군기본계획, 204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 2040년 김제도시기본계획,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2040년 아산도시기본계획, 2035년 여주도시기본계획,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2040년 영암군기본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2012~2022년 국토계획평가 검토 위탁 연구 연차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2.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

1)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운영 성과

(1) 도시·군기본계획의 합리적 계획인구 설정 유도

□ 전체 평가대상 계획 중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도시·군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 계획)은 국토계획평가제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계획인구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 계획인구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수립권자는 경제, 사회, 정치·행정적 요인에 의해 계획 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하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개발 중심의 발전을 유도(김명한, 2020)
- 2012년 국토계획평가제도 도입 이후 주요 평가대상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한 경우, 검토의견 작성 및 제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합리적 계획인구 설정을 유도하였음
- 국토계획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 2020년 이후부터는 계획인구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합리적 계획인구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근거로 성장형 도시의 경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110%, 성숙안정형 도시는 105% 수준에서 계획인구를 설정하도록 유도
 - 사회적 증가분에 반영할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승인을 얻은 사업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개별법에 의한 승인, 허가를 얻은 경우만 반영하도록 유도(김명한, 2020)

□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은 광역시·도가 갖고 있으므로, 국토계획평가 절차상 계획인구 조정에 대한 강제권은 없으나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계획평가분과의 심의 기능을 활용 하여 승인 신청 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인구를 조정하고 있음

- 광역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체 승인권을 갖고 있으므로, 합리적

계획인구 설정 및 조정 기능이 적극적으로 작동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국토 계획평가 절차상 계획인구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은 도가 가지고 있는 시·군의 경우에도 국토계획 평가 절차상 사업협의를 진행함으로써 계획인구 조정을 유도함

□ 사전협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계획인구 조정을 유도하였으며, 도시 특성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분위기를 조성함

- 사업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계획인구가 최종 승인·고시된 계획인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과도한 계획인구 설정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계획인구 승인 과정에 소모되는 행정적 절차를 단축
-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계획인구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부산, 안산, 아산, 광주, 원주, 남원, 단양 등 약 50개 도시의 계획인구를 조정(국토연구원, 2023)
 -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평가제도를 통해 최종 협의 완료된 3,500,000명으로 최종 승인·고시됨
 - 그 밖에 도시의 경우도 협의 완료 이후 합리적 수준으로 계획인구가 조정됨

표 2-3 | 국토계획평가제도를 통한 계획인구 조정 사례

계획명	협의 전 계획인구	협의 완료 후 계획인구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4,200,000명	3,500,000명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970,000명	810,000명
2040년 아산도시기본계획	826,000명	610,000명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경기)	690,000명	550,000명
2040년 원주도시기본계획	490,000명	438,000명
2040년 남원도시기본계획	100,000명	78,000명
2040년 단양군기본계획	43,000명	33,000명

주: 협의 완료된 계획인구는 최종 승인·고시된 계획인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토연구원, 2023. 국토계획평가제도 및 국토계획평가센터 운영 실적(내부자료).

(2)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국토계획평가 대상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관련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계획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를 통해 평가 대상 계획과 관련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계획수립권자가 사후에 보완하도록 유도함
-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 2020년 이후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사전에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후에 정식으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에 대한 사전검토 이후 평가대상 계획의 내용이 높은 수준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계획 간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비롯하여 도로 계획, 철도 계획과 같은 계획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부문별계획 수립 시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유도함

- 약 60개 계획안의 주요 내용인 도로계획과 철도계획 수립 시 근거가 되는 상위 계획명을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 자체 구상임을 제시하도록 유도(국토연구원, 2023)

표 2-4 | 도로계획, 철도계획에 대한 정합성 검토 사례

정합성 검토 전			정합성 검토 후		
구분	구간 및 연장	비고	구분	구간 및 연장	비고
도로계획 A	A~A 20km		도로계획 A	A~A 20km	제2차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도로계획 B	B~B 40km		도로계획 B	B~B 40km	자체구상
철도계획 C	C~C 60km		철도계획 C	C~C 60km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철도계획 D	D~D 80kn		철도계획 D	D~D 80kn	자체구상

자료: 저자 작성.

□ 도종합계획 수립 시 각 부문별계획에 시·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지침을 제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함

- 국토계획평가제도를 통해 2020년 이후 수립된 도종합계획의 각 부문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보완하도록 유도함

- 경기도 종합계획, 강원도 종합계획, 충청북도 종합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 전라북도 종합계획, 전라남도 종합계획, 경상북도 종합계획,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시군 수립지침을 마련하도록 유도함

표 2-5 |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시·군 계획지침 제시 사례

〈인구감소시대 도시생활공간 조성 관련 시·군 계획지침(안)〉
○ 시·군은 인구감소에 적응하여 유휴방치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촉과 광역생태축이 상충되지 않도록 공간구조를 설정하며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시가화지역으로 입지를 유도하는 등 압축적 개발을 지향한다. ○ 시·군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SOC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심부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한다. ○ 시·군은 주민의 도시권 보장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공간환경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인구감소시대 지역맞춤형 도시·군기본계획을 개발총량 규제방식에서 계획허가방식으로 전환한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건강도시 조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군은 도심과 주변지역, 도시부와 농촌부의 정주체계의 집약화 및 인프라 공급·관리의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한다. ○ 시·군은 인구감소와 도시쇠퇴로 발생한 유휴·방치공간을 도시재생에 적극 활용하여 장소적 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도시의 공간적 가치를 높이는 주민주도적 체계적·점진적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한다.

자료: 충청남도, 2021.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p.222.

□ 그 밖에도 국토계획평가제도를 통해 환경부문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를 유도하고, 특정 도시를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계획 간 정합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3) 도시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유도

□ 평가대상 계획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정식 검토 요청 이후, 검토 결과와 관련된 업무 협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부문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

-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문별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도시 및 지역 특성이 반영된 부문별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함

- 도시 및 지역의 현황과 특성이 수립된 부문별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계획(안)에 대한 보완 요청

- 특히, 계획인구와 토지이용계획에 집중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계획이 좀 더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 2018년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을 통해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계획내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마련하도록 유도함

- 2020년 이후 수립된 도종합계획에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 결과를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유도함

□ 평가대상 중 부문별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업무협의를 통하여 해당 계획의 특성이 반영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함

- 평가대상 계획 중 약 15개 부문별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업무협의를 통하여 계획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국토계획평가제도를 통하여 부문별계획의 주요 내용에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인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 등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함

- 개발과 관련된 평가대상 계획에 친환경성을 보완하고, 환경과 관련된 평가대상 계획에 효율성과 형평성을 보완하도록 유도함

2)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한계

(1)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관리 미흡

□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을 위한 정기적인 반영 절차가 없어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관리가 미흡

- 현 제도에서는 근거 법령에서 폐지된 계획, 개정으로 인해 대체된 계획 등 평가대상 계획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또한, 여건 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되는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가 없어 보완 필요

□ 국토계획평가제도 수행 관련 계획수립권자의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 필요

- 평가대상 계획 중 꾸준히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대상 계획이 존재하며, 이는 계획수립권자에 대한 제도 안내 및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2) 국토계획 간 연계 부족

□ 현행 국토계획평가제도의 28개 대상 계획 중 23개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거나 관련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평가대상 확대 및 국토계획 간 연계 강화 필요

-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10개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주거종합계획 등 10개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수립

- 4개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계획 수립권자는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계획으로는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등 4개 계획이 있음
- 그 밖에 국토계획평가제도가 도입된 2012년 국토해양부²⁾가 수립했던 9개 계획이 포함됨
 -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댐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등 9개 계획이 포함
- 정리해 보면 제도가 도입된 2012년 국토해양부가 계획수립권자로서 수립했던 19개 계획,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4개 계획 등 23개 대상 계획이 국토교통부와 관련이 있음

□ 따라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타 부처에서 수립하는 국토공간을 다루는 5년 이상의 지침적 성격의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토계획 간 연계성 강화 필요

(3) 국토계획평가제도 과정상 절차적 부담 증가

- 평가대상 계획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전협의,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결과 반영 등 제도상 다양한 절차가 운영됨에 따라 계획수립권자의 절차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계획인구에 대한 사전협의를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요되는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계획수립권자의 시간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2) 대한민국의 국토자원을 통합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중앙행정기관으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가, 2013년 3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개편되면서 폐지됨(두피디아(www.doopedia.co.kr) 2023년 6월 5일 검색)

- 시·군이 원하는 계획인구와 지침상 적정 수준의 계획인구 간 차이가 큰 경우 협의 횟수 및 시간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

- 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인구 추계와 토지이용계획 수립 방법은 인구성장기에 적합하였으나, 급격한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한 현시점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하여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함

-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확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획(안) 및 요청서 보완에 필요한 계획수립권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상위 및 유관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대상 계획의 주요 내용 간 정합성 검토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계획(안) 및 요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

□ 향후,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절차를 밟고 있는 계획수립권자가 시간적 절차적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 필요

(4) 국토계획평가제도 영역을 벗어나는 도시 존재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도시의 경우 국토계획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비롯하여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

- 전국의 162개 시·군 중에서 129개 시·군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토계획평가를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음

-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33개 군은 국토계획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의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친환경성 제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음

- 충청남도 2개 군, 전라북도 6개 군, 전라남도 10개 군, 경상북도 7개 군, 경상남도 8개 군 등 33개 군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 도시관리계획에는 도시특성 분석, 상위계획 검토, 도시 미래상 및 목표 설정, 인구지표 설정, 공간구조 구상 및 생활권 설정 등 도시기본계획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음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5장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에는 시군의 장기발전 구상, 공간구조 및 생활권, 토지이용,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

- 또한, 관련계획과의 관계에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전국의 모든 도시에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내재화하고 상위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지침적 성격의 종합계획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평가 절차 및 방법 간소화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3.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

1)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현황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면서, 미래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계획기간이 5년 이상인 중·장기 계획을 평가대상 계획으로 설정

-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에는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28개 계획을 명시하고 있음
 - 28개 평가대상 계획에는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기간시설계획 11개, 부문별계획 12개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2-6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현황

구분	계획명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유형)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계획)	국가기간망교통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rina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관리기본계획
부문별계획 (12개 계획)	주거종합계획, 농어촌 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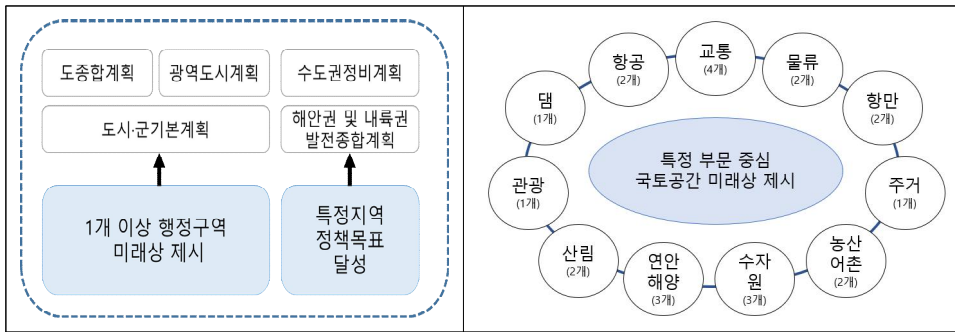
자료: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 제도 도입 당시 평가대상으로 제안된 49개 계획 중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치면서 28개로 축소 조정되었다는 한계도 지적(민성희 외, 2018)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기여하는 계획, 공간적인 속성을 지니지 않은 계획,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선정 목적의 계획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지역개발, 환경, 산업 등 계획은 제외됨(민성희 외, 2018)
-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일부 조정 및 변경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28개 평가대상 계획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17년 광역개발사업계획이 대상 계획에서 삭제, 도로건설·관리계획 대신 국가도로 망종합계획이 대상 계획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조정이 있었음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은 크게 도시 및 지역 등 1개 이상의 특정 행정구역의 미래 발전방향을 다루는 공간계획과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국토공간의 미래 발전방향을 다루는 계획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공간을 아우르는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계획 등이 있음
 -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국토공간을 아우르는 계획은 도로·철도 등 교통 관련계획(4개),

항만 관련계획(2개), 공항 관련계획(2개), 물류 관련계획(2개), 댐 관련계획(1개), 주거 관련계획(1개), 농산어촌 관련계획(2개), 수자원 관련계획(3개), 산림 관련계획(2개), 연안 및 해양 관련계획(3개), 관광 관련계획(1개) 등이 있음

- 종합해보면, 현행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은 1개 이상 시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비롯하여, 특정 부문에서 국토공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으로 구성

그림 2-1 | 현행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의 공간적 부문적 특성



자료: 저자 작성

2)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

□ 첫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으로 선정되면 계획수립권자가 자체적으로 계획내용을 검토하고, 심의 과정에서 계획을 보완할 수 있어 계획의 질적 제고 가능

- 국토계획평가 과정을 통해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맞게 계획 내용을 적절히 마련했는지에 대해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또한, 자체평가 결과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계획 평가분과의 심의 과정을 통하여 평가대상 계획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음

□ 둘째, 선정된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에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내재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실현 가능

-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등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평가대상 계획에 반영하여 조화롭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할 수 있음
-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같이 공간을 다루는 계획과 국토 공간 위에서 다양한 주제로 수립·실현되는 부문별계획 등 다양한 계획을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발과 환경의 개념을 골고루 반영함과 동시에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셋째, 평가대상 계획으로 선정되면 국토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하여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관된 방향과 내용으로 평가대상 계획 간 연계체계 구축 가능

-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을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으로 선정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공간단위 상위계획의 주요 내용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음
- 특정 주제를 다루는 부문별 상위계획을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비롯한 공간단위 상위계획과 부문별 상위계획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공간을 다루고 있는 종합·지역계획과 교통, 물류, 항공, 관광 등 부문별 상위계획이 정합성을 확보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 가능
- 특정 주제를 다루는 부문별계획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음

□ 넷째, 지역·종합계획, 부문별 상위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국토계획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계시킴으로써 국토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음

- 지역·종합계획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별 상위계획을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계획 간 연계를 바탕으로 국토 공간과 공간 위에 실현되는 다양한 계획내용이 종합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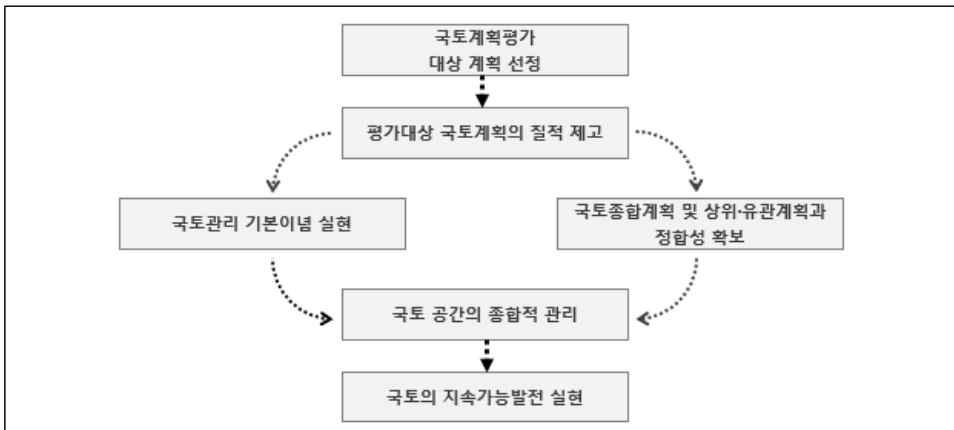
- 특정 지역에 대한 공간계획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토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은 국토 공간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대상 계획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계획의 질적 제고, 국토관리 기본이념 내재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계획을 보완하기가 어려움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은 국토계획평가센터를 비롯한 내외부 전문가들이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한 자체 평가와 심의 과정을 통해 계획의 주요내용을 고시 전에 보완하기 어려움

□ 따라서, 여건 변화 및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수립되고 있는 다양한 국토계획이 국토 계획평가 대상 계획으로 추가되어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림 2-2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



자료: 저자 작성



CHAPTER 3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

- 1. 개요 35
- 2.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제외 55
- 3.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추가 66
- 4.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안 제시 78

03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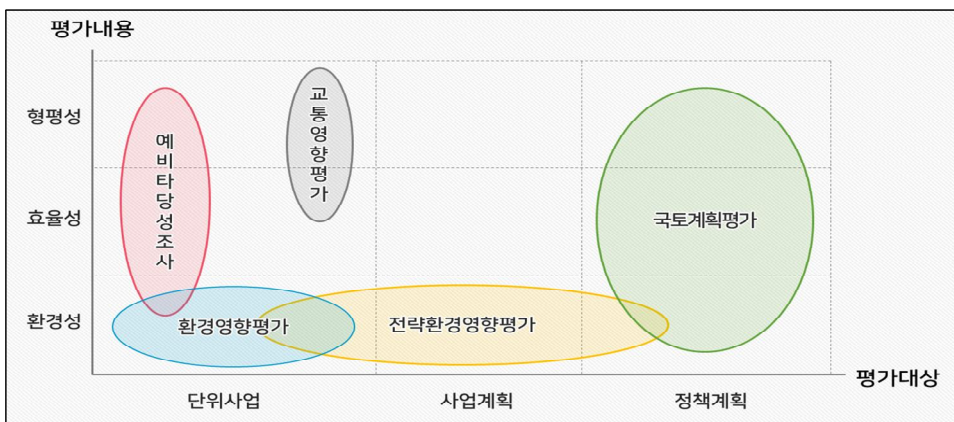
1)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 방안

(1)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의 범주 설정

□ 국토계획평가제도는 타 평가제도와 비교하여 평가내용에서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모두 다루고 평가대상으로 정책계획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성만 다루고 정책계획, 사업계획 등 모든 계획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림 3-1 | 국토계획평가제도와 타 평가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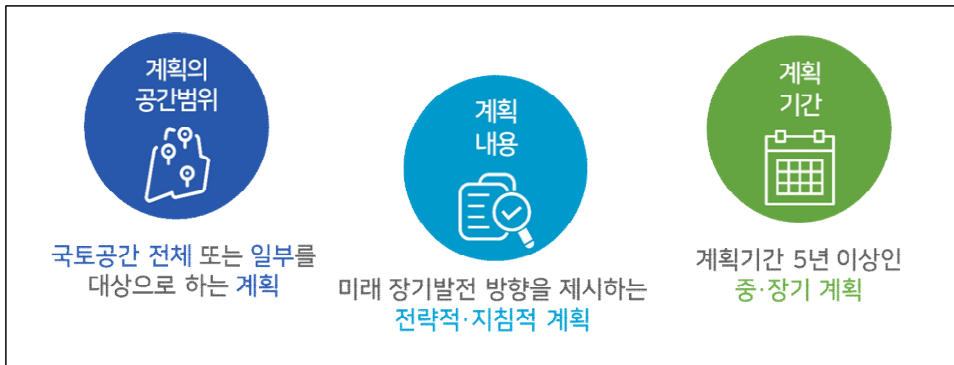


자료: 국토연구원, 2021.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 p.5.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 시 계획의 공간범위, 계획내용, 계획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평가대상 계획을 확정하였음

- 계획의 공간범위 차원에서는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기준을 설정
- 계획내용은 미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 기준을 설정
- 계획기간은 5년 이상 중·장기계획으로 기준을 설정

그림 3-2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의 성격



자료: 국토연구원, 2021.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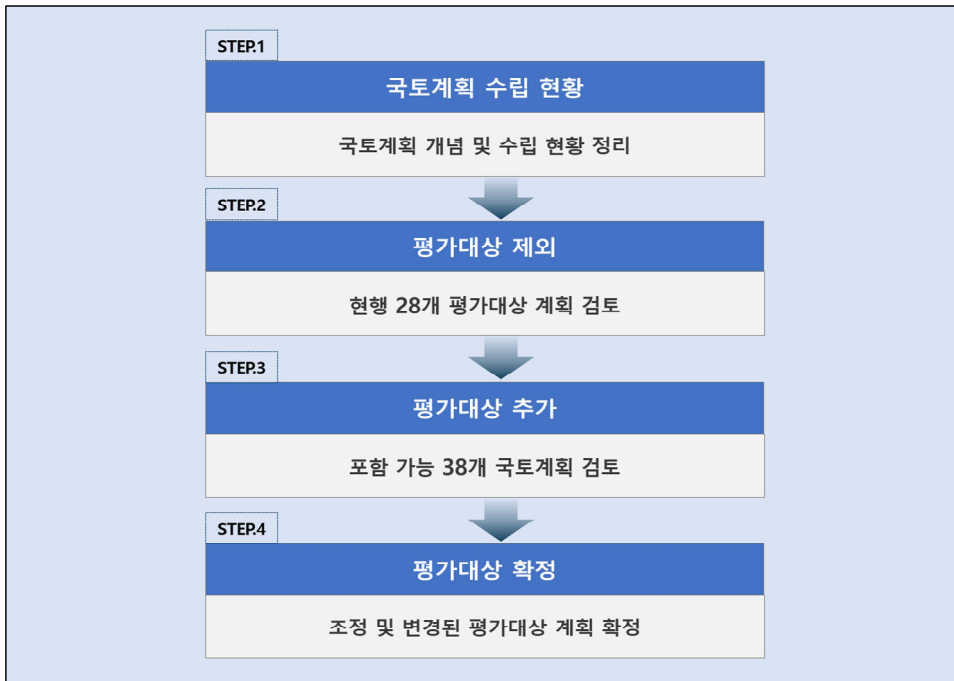
(2)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 절차

□ 이 연구에서는 국토계획의 개념 및 수립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계획과 평가대상에서 추가될 필요가 있는 계획을 검토하여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평가대상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정함

- 국토계획의 개념은 관련 법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정리하고, 현행 국토 계획평가 대상 계획을 포함하여 분야별, 부처별 국토계획 수립현황을 정리

-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계획은 현행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조정 및 변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제시
 - 현행 평가대상 계획이나 단 한 번도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계획과 국토 계획평가를 수행하였으나 평가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계획에 대해 검토
- 평가대상에서 추가가 필요한 계획은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평가대상 계획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38개 국토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시
 - 현재 수립 중이거나 수립 예정인 국토계획 중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포함 가능한 38개 국토계획에 대해 검토
-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을 조정 및 변경안을 마련
 - 조정 및 변경안은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그림 3-3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 절차



자료: 저자 작성

2) 국토계획의 개념 및 수립현황

(1) 국토계획의 개념 및 분야

① 국토계획의 개념

□ 「국토기본법」 제6조에서는 국토계획을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

- 「국토기본법」 제6조에서는 국토계획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음
 -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초광역권계획: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전,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 지역계획: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동법 제7조에서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
- 이용우 외(2011)는 국토계획을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개선하고 미래 국토에 예상되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계획으로 정의

□ 이를 종합하면 국토계획은 국토 전역 또는 도시, 지역 등 한 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국토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음

② 국토계획의 분야

□ 국토계획의 분야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크게 한 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이용우 외(2011)는 국토계획 분야를 종합 및 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환경계획, 기타 부문계획 등 4가지 분야로 구분함
 -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등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은 종합적 성격의 계획이므로 종합 및 지역계획으로 구분
 - 「국토기본법」상 부문별계획은 도로, 철도, 산림, 수질, 주택, 산업 등 계획대상의 성격이 다양하므로 먼저 유사한 성격의 기간시설계획과 환경계획을 묶은 후에, 여타 계획들을 기타 부문계획으로 구분함

표 3-1 | 국토계획의 분야 구분

국토계획 분야	세부 분야
종합 및 지역계획	종합, 지역
기간시설계획	교통,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물류
환경계획	산림, 폐기물, 수질, 환경
기타 부문계획	주택, 산업, 수자원, 하천, 골재, 해양, 관광 등

자료: 이용우 외. 2011. 국토계획평가 시행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p.12.

- 국토교통부는(2022)는 국토계획체계에 대한 개편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국토계획을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음
 - 종합계획으로는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을 구분
 - 지역계획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 지역발전계획, 기타 지역발전계획 등으로 구분
 - 부문별계획은 국토분야 중장기계획과 여타분야 중장기계획 등으로 구분

그림 3-4 |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자료: 국토교통부, 2022. 2022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p.47.

(2) 국토계획 수립현황

① 국토계획 수립현황 조사 방법

- ☐ 이 연구에서는 국토계획의 개념 및 분야에 대한 정리를 통해 국토계획을 종합·지역 계획과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여 현황조사를 수행함
- ☐ 종합·지역계획에 대한 수립현황은 국토계획 체계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고, 국가 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과 이에 근거하여 실제 수립된 계획을 조사 및 정리함
 - 종합·지역계획은 시행 중인 법령에 근거한 계획을 조사 정리하였으며, 현재 계획수립 과정에 있어 고시되지 않은 계획도 포함하여 정리함

□ 부문별 국토계획 수립 현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처별 소관 법령 (예정법령 포함)을 검색한 후, 각 법령에 근거한 부문별계획을 정리함

- 부문별 국토계획 수립현황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등 다양한 부처 소관 법령에서 제시된 분야별 상위계획을 1차로 조사·정리함
- 1차로 정리된 국토계획 중 계획기간이 5년 이상이며, 전략적·지침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계획을 부처별 부문별로 정리하여 제시함
 - 사업적 성격의 계획과 특정 세부 분야에 집중된 일부 계획은 제외함

② 종합·지역계획

-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계획(대한민국정부, 2019)
 - 2019년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수립되었으며,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을 선도하고 있음
- 초광역권계획은 2022년 「국토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수립 예정인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하면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의하여 설정된 초광역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도 지역차원에서 구현하고 시·군종합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충청남도, 2021)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종합계획(제4차)을 수립 중임
-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행정구역(시·도·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 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창원권, 공주역세권, 내포신도시권 등의 권역에서 2040년을 목표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임
 -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 관할구역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2023년 현재 전국적으로 129개의 시·군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임
 - 도시·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을 비롯하여,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지침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획(국토교통부, 2020b)
 - 2020년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고시됨
 -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의 중간단계에 있는 지역계획의 한 유형으로 해안내륙발전법상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승인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이자 종합계획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등이 2030년을 목표연도로 계획을 수립 중임
 -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연계하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연계된 전략계획(송우경, 2023)
 - 2023년 7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임

- 새만금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2017년 12월 새만금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어 관련 개발사업이 추진 중임

표 3-2 | 종합·지역계획 분야 국토계획 수립현황

계획명 (계획기간)	근거 법률명	주요 내용	계획 수립권자
국토종합계획 (20년)	국토기본법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공간을 다루는 최상위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초광역권계획*	국토기본법	2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초광역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단체장
도종합계획 (20년)	국토기본법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시·군종합계획의 수립 방향 제시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2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둘 이상의 행정구역의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능 등을 연계하고 설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	관할 시·도지사 공동 또는 관할 시장·군수 공동
도시·군기본계획 (2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도시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시·군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종합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도시·군관리계획 (2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서 구체화하는 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수도권정비계획 (20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 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수도권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침적 역할 수행	국토교통부장관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10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해안권, 내륙권 등 설정된 권역의 경제, 문화, 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시·도지사 공동
지방시대 종합계획* (5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최상위계획으로 5년 단위 실행계획이자, 법정부계획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기본계획 (10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종합계획	새만금개발청장

주: 초광역권계획과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2023년 8월 31일 기준 근거 법령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고시되지 않음.
자료: 근거 법률 및 문헌의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③ 국토교통부 소관 부문별 국토계획

□ 국토교통부 소관 법에 근거한 교통 부문 국토계획은 [표 3-3]과 같으며, 사업계획 성격의 일부 계획은 목록에 포함하지 않음

- 교통 부문 국토계획은 교통망, 도로, 철도, 항공 관련 계획이 다수 수립되고 있으며, 국가기간망교통계획을 포함한 6개 계획은 현재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임

표 3-3 |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부문 국토계획 수립현황

계획명	계획 수립권	계획기간	근거 법률명	비고
국가기간망교통계획	국토교통부	20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망 (국토계획평가대상)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망 (국토계획평가대상)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국토교통부	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망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국토교통부	10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망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국토교통부	5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망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5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망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토교통부	10년	도로법	도로 (국토계획평가대상)
고속도로 건설계획	국토교통부	5년	도로법	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국토교통부	10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 (국토계획평가대상)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시·도	10년	도시철도법	철도
항공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	5년	항공사업법	항공 (국토계획평가대상)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5년	공항시설법	항공 (국토계획평가대상)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부처별 소관법령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 및 대중교통 부문 국토계획 수립현황은 [표 3-4]와 같으며, 사업계획 성격의 일부 계획은 목록에 포함하지 않음

- 현재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을 포함한 물류 부문 국토계획이 있으며, 대중교통 부문 국토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현재 국토계획평가 대상은 아님

표 3-4 |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 및 대중교통 부문 국토계획 수립현황

계획명	계획 수립권	계획기간	근거 법률명	비고
국가물류기본계획	국토교통부	10년	물류정책기본법	물류 (국토계획평가대상)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10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물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5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 (국토계획평가대상)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국토교통부	5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류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	국토교통부	5년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 및지원에관한법률	물류
대중교통기본계획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5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5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대중교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부처별 소관법령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국토교통부 소관 법에 근거한 산업, 도시, 주거 부문 국토계획 수립현황은 [표 3-5]와 같으며, 사업계획 성격의 일부 계획은 목록에 포함하지 않음

- 산업 부문 국토계획은 노후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며,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관련 국토계획이 수립 중임
- 또한 현재 국토계획평가 대상인 주거종합계획을 포함한 주거 부문 국토계획이 수립 중이며, 그 밖에 빈집, 건축 관련 국토계획이 있음

- 산업 및 도시 부문 국토계획의 경우 현재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5 | 국토교통부 소관 산업, 도시, 주거 부문 국토계획 수립현황

계획명	계획 수립권	계획기간	근거 법률명	비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10년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산업단지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국토교통부	10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공업지역
공업지역기본계획	시·군	5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공업지역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국토교통부	10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도시재생전략계획	시장, 군수	10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5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국토교통부	5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10년	주거기본법	주거 (국토계획평가대상)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국토교통부	5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	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도	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
빈집정비계획	시·군	5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빈집
건축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	5년	건축기본법	건축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5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부처별 소관법령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그 밖에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계획으로는 공간정보, 경관, 안전, 골재, 토지, 지역 개발 부문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기반시설, 지하, 시설물 등의 안전관련 계획을 포함하여 공간정보정책 기본 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등 국토부 소관 법령에 근거한 부문별 국토계획을 평가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표 3-6 | 국토교통부 소관 공간정보, 경관, 안전 부문 국토계획 수립현황

계획명	계획 수립권	계획기간	근거 법령명	비고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5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안전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5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5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정부	5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경관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	5년	경관법	경관
골재수급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5년	골재채취법	골재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10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부처별 소관법령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저자 작성.

④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문별 국토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에 근거한 부문별 국토계획 수립현황은 [표 3-7]과 같으며, 사업계획 성격의 일부 계획 및 특정 분야의 산업계획은 목록에 포함하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에 근거하여 가장 많이 수립되고 있는 국토계획은 산업 부문의 발전 계획이며, 첨단산업, 산업집적, 지역산업, 산업기술, 산업 융합 등과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부문의 국토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에 의해 수립되고 있음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문별 국토계획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계획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에 근거한 국토계획은 현행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음

표 3-7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문별 국토계획 수립현황

계획명	계획 수립권	계획기간	근거 법률명	비고
국가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	정부	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첨단산업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5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부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정부	5년	부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지역산업
산업기술혁신계획	산업통상자원부	5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정부	5년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10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5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5년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10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2024년 6월 시행)	에너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10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시·도	5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부처별 소관법령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저자 작성.

⑤ 해양수산부 소관 부문별 국토계획

□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 근거한 부문별 국토계획 수립현황은 [표 3-8]과 같으며, 사업계획 성격의 일부 계획은 목록에 포함하지 않음

- 해양수산부 소관 국토계획 중 해양환경종합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등 4개 계획은 현재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으로 선정되어 있음
- 그 밖에 해양수산부 소관 국토계획은 해양수산, 해양공간, 어촌·어항, 항만 재개발, 섬, 간척지, 수산업, 갯벌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표 3-8 | 해양수산부 소관 부문별 국토계획 수립현황

계획명	계획 수립권	계획기간	근거 법률명	비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정부	10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
해양공간기본계획	해양수산부	10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수산부	10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 (국토계획평가대상)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	해양수산부	10년	어촌·어항법	어촌·어항
항만기본계획	해양수산부	10년	항만법	항만 (국토계획평가대상)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해양수산부	10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10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 (국토계획평가대상)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수산부	10년	연안관리법	연안 (국토계획평가대상)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해양수산부	10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10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간척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5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해양수산부	5년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
갯벌등의 관리·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	5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부처별 소관법령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저자 작성.

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부문별 국토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에 근거한 부문별 국토계획 수립현황은 [표 3-9]와 같으며, 사업계획 성격의 일부 계획은 목록에 포함하지 않음

- 해양수산부 소관 국토계획으로는 현재 국토계획평가 대상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 있으며, 귀농·귀촌 관련계획이 있음
- 또한 최근 시행된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 예정인 농촌공간계획과 스마트농업 관련 계획이 있으며, 그 밖에 농업자원, 식품산업 분야의 국토계획이 있음

표 3-9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부문별 국토계획 수립현황

계획명	계획 수립권	계획기간	근거 법률명	비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정부	5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국토계획평가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5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귀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	10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시·군	10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계획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5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년 7월 시행)	스마트농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5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자원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5년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5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융복합산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부처별 소관법령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저자 작성.

⑦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문별 국토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 근거한 부문별 국토계획 수립현황은 [표 3-10]과 같으며, 사업계획 성격의 일부 계획은 목록에 포함하지 않음

- 해양수산부 소관 국토계획으로는 현재 국토계획평가 대상인 관광 분야 최상위 계획인 관광개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여가, 문화 분야의 계획이 있음

표 3-10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문별 국토계획 수립현황

계획명	계획 수립권	계획기간	근거 법률명	비고
관광개발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10년	관광진흥법	관광 (국토계획평가대상)
관광진흥기본계획	정부	5년	관광기본법	관광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5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여가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5년	문화기본법	문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부처별 소관법령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저자 작성.

⑧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국토계획

□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근거한 부문별 국토계획 수립현황은 [표 3-11]과 같으며, 사업계획 성격의 일부 계획은 목록에 포함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소관 국토계획으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온천발전종합계획, 국가 및 시·도 차원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 있음
- 현재까지는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에 행정안전부 소관 국토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 3-11 |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국토계획 수립현황

계획명	계획 수립권	계획기간	근거 법률명	비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행정안전부	20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행정안전부	5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시·도	5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
온천발전종합계획	행정안전부	10년	온천법	온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부처별 소관법령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저자 작성.

⑨ 환경부 소관 부문별 국토계획

□ 환경부 소관 법령에 근거한 환경보호·보전 부문 국토계획은 [표 3-12]와 같으며, 사업계획 성격의 일부 계획은 목록에 포함하지 않음

- 환경보호 및 보전 부문 국토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비롯하여 자연환경, 대기환경, 토양 등 계획이 있으며, 현재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음

표 3-12 | 환경부 소관 환경보호·보전 부문 국토계획 수립현황

계획명	계획 수립권	계획기간	근거 법률명	비고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부	20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야 최상위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부	10년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환경부	10년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5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
토양보전기본계획	환경부	10년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
공원기본계획	환경부	10년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환경부 산림청	10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부처별 소관법령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환경부 소관 법령에 근거한 환경관리·활용 부문 국토계획은 [표 3-13]과 같으며, 사업계획 성격의 일부 계획은 목록에 포함하지 않음

- 환경관리·활용 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토계획은 물관리 관련 계획이며, 현재 국토계획평가 대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 댐관리기본계획 등 4개 계획이 포함
- 그 밖에 환경관리·활용 부문의 국토계획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을 비롯하여 자원순환 분야 계획과 환경보건 분야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음

표 3-13 | 환경부 소관 환경관리·활용 부문 국토계획 수립현황

계획명	계획 수립권	계획기간	근거 법률명	비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환경부	20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물관리 (국토계획평가대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환경부	10년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지하수관리기본계획	환경부	10년	지하수법	물관리 (국토계획평가대상)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	환경부	10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물관리 (국토계획평가대상)
국가수도기본계획	환경부	10년	수도법	물관리
국가하수도종합계획	환경부	10년	하수도법	물관리
물 재이용 기본계획	환경부	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관리
댐관리기본계획	환경부	10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관리 (국토계획평가대상)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	20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도	10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
자원순환기본계획	환경부	10년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
순환경제기본계획	환경부	10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5년 1월 시행)	자원순환
환경보건종합계획	환경부	10년	환경보건법	환경보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정부	5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보건
석면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5년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보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부처별 소관법령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저자 작성.

⑩ 산림청 소관 부문별 국토계획

□ 산림청 소관 법령에 근거한 부문별 국토계획 수립현황은 [표 3-14]와 같으며, 사업계획 성격의 일부 계획은 목록에 포함하지 않음

- 산림청 소관 국토계획으로는 현재 국토계획평가 대상인 산림기본계획과 산촌진흥기본계획을 포함한 산림, 산촌 분야의 계획이 있음
- 그 밖에 산림복지, 도시 숲 조성, 탄소흡수원 증진 분야의 국토계획이 있어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3-14 | 산림청 소관 부문별 국토계획 수립현황

계획명	계획 수립권	계획기간	근거 법률명	비고
산림기본계획	산림청	20년	산림기본법	산림분야 최상위계획 (국토계획평가대상)
산지관리기본계획	산림청	10년	산지관리법	산림
국유림종합계획	산림청	10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산촌진흥기본계획	산림청	10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촌 (국토계획평가대상)
도시숲등 기본계획	산림청	10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 숲
산림복지진흥계획	산림청	5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림청	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국토계획평가대상)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산림청	5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부처별 소관법령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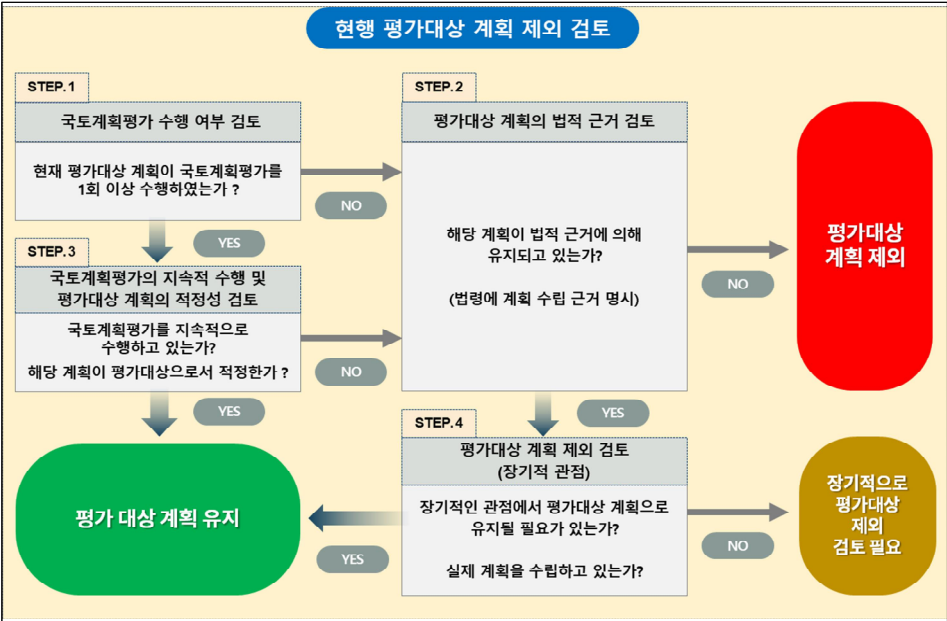
2.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제외

1) 평가대상 계획 제외를 위한 프로세스

□ 현행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토계획평가 수행여부, 계획수립 여부, 국토계획평가의 지속적 수행 및 평가대상 계획의 적정성, 평가대상 계획 제외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설정함

- (STEP. 1) 현행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2012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국토계획 평가를 1회 이상 수행한 계획과 그렇지 않은 계획으로 분류
- (STEP. 2) 단 한 번도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계획 중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경우, 평가대상 계획에서 제외함
- (STEP. 3) 1회 이상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한 계획 중 국토계획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평가대상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은 평가대상 계획으로 유지함
 - 계획의 주요내용 및 성격이 평가대상으로 적정하지 않거나, 국토계획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대상 계획의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STEP. 4) 국토계획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법적 근거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계획, 평가대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계획을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제외 여부에 대해 검토함
 - 지속적으로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지 않지만 법적 근거에 의해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은 유지
 - 법적 근거는 있지만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거나, 계획의 내용 및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계획은 장기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계획으로 분류

그림 3-5 | 평가대상 계획 제의를 위한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2) 평가대상 제외 계획 도출 방안

- 평가대상 제외 계획을 도출하기 방안은 [그림 3-6]과 같으며 2012~2022년 사이 국토 계획평가 세부 운영 실적을 활용하여 해당 계획을 확인함(본 보고서 p.15 [표 2-2] 참고)
-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단 한 번도 국토계획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계획, 한 차례 국토 계획평가를 완료했으나 평가 절차를 밟지 않는 계획으로 분류하여 검토 대상 계획 선정
 - 2012~2022년 사이 국토계획평가 세부 운영 실적 검토를 통해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대상 계획을 확인
 - 국토계획평가를 한 차례 완료한 계획 중 계획기간이 지났음에도 다시 절차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계획을 확인

□ 또한,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평가대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계획으로 분류하여 검토 대상 계획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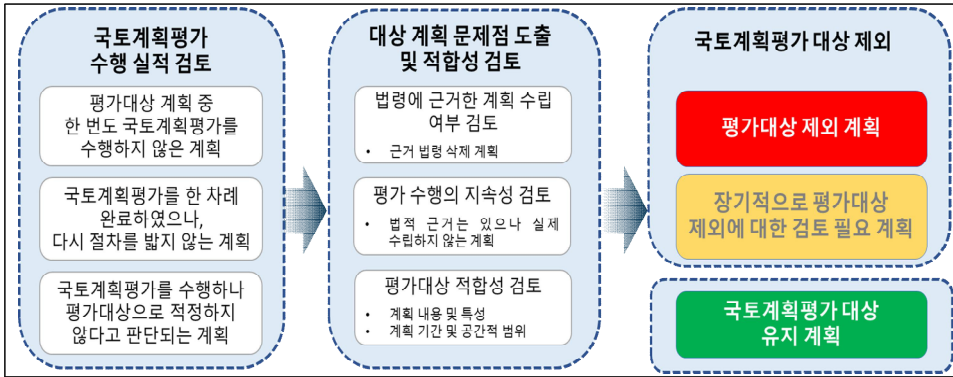
- 꾸준히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계획 중 계획내용 및 특성상 평가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계획을 선정

□ 다음은 앞에서 확인 및 선정된 세 가지 분류 대상 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함

- 첫째, 국토계획평가를 단 한 번도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획기간이 지났음에도 다시 평가 절차를 밟지 않은 계획을 대상으로 현재 근거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검토함
 - 근거 법령에서 삭제되었거나, 삭제 예정인 계획은 평가대상 제외 계획으로 확정함
- 둘째, 법적 근거는 갖고 있으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는 수립하지 않는 계획을 도출하여 국토계획평가 수행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
 - 근거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수립하지 않는 계획은 장기적으로 평가대상 제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계획으로 분류
- 셋째, 법적 근거에 의해 실제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계획은 평가대상 계획으로 유지함
 - 실제 계획은 수립 중이나 한 차례도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계획, 근거 법령이 변경되었거나 법령 개정으로 계획명이 변경된 계획 등은 평가대상 계획으로 유지
 - 다만,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근거에 대해 계획수립권자의 확인 절차 필요
- 넷째,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꾸준히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계획 중 계획내용 및 성격이 평가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계획을 대상으로 검토를 수행
 - 검토 결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적으로 평가대상 제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계획으로 분류

- 최종적으로 앞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대상 제외 계획, 장기적으로 평가대상 제외에 대한 검토 필요 계획, 국토계획평가 대상 유지 계획으로 구분하여 확정함

그림 3-6 | 국토계획평가 대상 제외 계획 도출 방안



자료: 저자 작성

3) 국토계획평가 대상 제외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1) 국토계획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계획

- 국토계획평가제도는 2012년 5월 시행되어 현재 운영 11년 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단 한 차례도 국토계획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계획이 존재

-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단 한 차례도 국토계획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계획은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4개 계획임
- 그 밖에 한 차례 국토계획평가를 완료하였으나, 계획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토계획평가제도 절차를 밟지 않은 계획으로는 연안통합관리계획, 댐건설장기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3개 계획이 있음

표 3-15 | 국토계획평가제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평가대상 계획

구 분	평가대상 계획
제도 도입이후 단 한 차례도 완료하지 않은 대상 계획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한 차례 완료하였으나, 다시 절차를 밟지 않은 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댐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자료: 저자 작성

□ 국토계획평가제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평가대상 계획 중 2개 계획은 법령상 삭제되어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평가대상 제외 계획으로 분류

-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은 2018년 4월 17일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해양공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연안통합관리계획은 폐지됨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담당자(이○○님)와의 전화 인터뷰 결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자원과 해양활동 관리정책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종전의 연안통합관리계획은 폐지된 것을 확인함

-2023년 8월 1일 전화 인터뷰 결과-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19년 6월 시행된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며 향후 근거 법령에서 삭제 예정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은 각 분야별 물관리 계획을 아우르는 물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서 물관리 일원화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담당자(심○○님)와의 전화 인터뷰 결과 「물관리기본법」 제정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수립으로 인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립하지 않으며, 근거 법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계획을 삭제할 예정임을 확인함

-2023년 8월 2일 전화 인터뷰 결과-

표 3-16 | 관련 법령 삭제(예정포함)로 인해 제외가 필요한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계획명	관련 내용
연안통합관리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18.4.17.)으로 인해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 삭제(2018.4.17. 삭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으로 대체되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며, 근거 법령에서 삭제 예정

자료: 저자 작성

(2) 장기적으로 평가대상 제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계획

□ 법령상 계획이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립하지 않는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토 계획평가 대상 제외에 대한 검토 필요 계획으로 분류

-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은 법령상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담당자(이OO님)와의 전화 인터뷰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한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어촌어항과 등의 담당자들과 전화 인터뷰 결과,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여부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주무 부처로 볼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므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수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8월 1일 전화인터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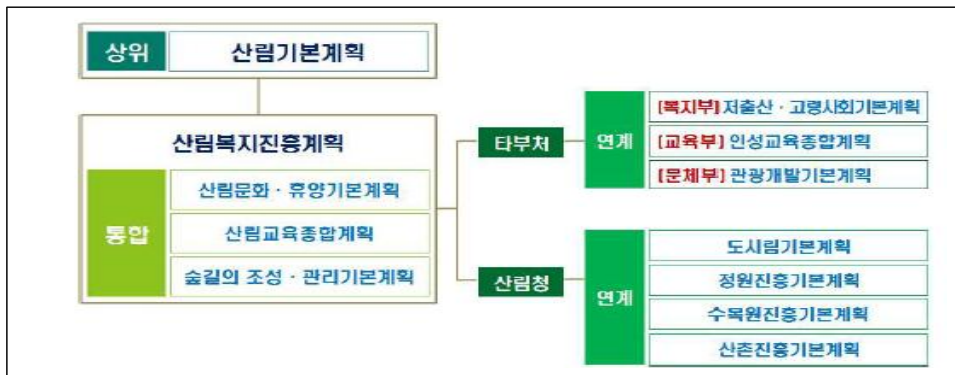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도 법령상 존재하고 있으나, 산림복지진흥계획(2018~2022)으로 통합되어 현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2017년 고시된 산림복지진흥계획에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림교육종합계획,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이 통합되었음을 명시
 - 제2차 산림복지진흥계획(2023~2027)에서는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지 않음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담당자(강OO님)와의 전화 인터뷰 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은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에서는 통합 수립하였으나, 제2차 산림복지진흥계획에서는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을 확인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는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책적 여건에 의해 계획수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함

-2023년 8월 2일 전화인터뷰 결과-

그림 3-7 |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2018~2022)과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관계



자료: 산림청. 2017.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2018~2022). p.6.

표 3-17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 제외에 대한 검토 필요 계획

계획명	관련 내용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나 실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나 산림복지진흥계획으로 통합 수립되거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현행 평가대상 계획 중 주요 내용과 특성이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국토계획평가 대상 제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계획으로 분류

- 권영섭 외(2016)는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이 중장기·지침적 성격을 가졌음에도 계획의 성격상 사업계획이 포함되는 등 평가대상의 문제점을 지적
- 항만기본계획은 전국의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을 포함한 60개 항만에 대한 계획을 각각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해양수산부, 2020c)
 - 항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항만의 구분 및 위치, 항만의 관리·운영, 항만시설 공급, 항만시설의 용도, 기능개선 및 정비, 연계수송망 구축, 항만시설 설치예정 지역 등임(해양수산부, 2020c)
- 따라서, 항만기본계획은 지침적 성격의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토의 일부 공간을 다루기는 하지만 항만이라는 특정 공간을 다루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계획으로 분류함
-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은 해양레저문화 확산 및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통해 마리나항만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나, 마리나항만의 개발 수요 추정을 통해 마리나항만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에서는 권역별 마리나항만 70개소의 입지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
-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은 지침적 성격의 계획이 아니며, 마리나항만의 입지를 지정하는 것을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계획으로 분류함

표 3-18 | 계획의 주요 내용 및 특성상 제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계획명	관련 내용
항만기본계획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도면 중심으로 수립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 보기 어려우며, 70개 마리나항만의 입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자료: 저자 작성

(3) 국토계획평가 대상 유지 계획

□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지만 근거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국토계획평가 대상 유지 계획으로 분류

-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은 2017년 3월 21일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으나 국토계획평가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음
 - 현재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이 수립·고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담관리 기본계획은 2021년 6월 15일 법령 개정에 따라 계획명이 변경되었으나 국토계획평가제도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음
 - 변경 전 계획인 담건설장기계획(2012~2021)은 2012년 국토계획평가를 완료하였으나, 2021년 6월 담관리기본계획으로 명칭 변경 및 계획기간 종료 이후 국토계획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은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국토계획평가를 완료하지 않음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토계획평가를 완료한 실적이 없어 검토 필요
- 이러한 계획은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거 법령에 의해 여전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대상 계획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 세 가지 평가대상 계획은 계획수립권자와의 확인 과정을 통해 향후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3-19 |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지 않지만 평가대상으로 유지가 필요한 계획

계획명	관련 내용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 삭제 및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으로 근거 법령이 변경되었으나 국토계획평가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음
댐관리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개정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에서 댐관리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변경 이후 국토계획평가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토계획평가 절차를 완료한 사례가 없음

자료: 저자 작성

(4) 소결

□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삭제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계획은 연안통합관리 계획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2개 계획

- 연안통합관리계획은 근거 법에서 삭제되어 평가대상 제외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으로 대체되었으며, 근거 법에서 삭제 예정이므로 제외

표 3-20 | 국토계획평가 대상 제외 계획

구분 및 근거		계획명
국토계획평가 대상 제외 계획	근거 법령에서 삭제되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연안통합관리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삭제 예정)

자료: 저자 작성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 제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계획은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향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등 4개 계획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은 법적 근거는 있으나 타 계획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으로 대체 가능하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근거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으로 대체 가능함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도 법적 근거가 있지만 타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되거나, 계획수립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 항만기본계획과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은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계획이지만, 계획의 주요내용 및 특성상 평가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항만기본계획은 사업성격이 강한 계획이며,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은 사업 대상지 선정이 주요 목적이므로 평가대상 계획에서 제외 필요

표 3-21 | 국토계획평가 대상 제외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계획

구분 및 근거		계획명
장기적으로 국토계획평가 대상 제외 검토 필요 계획	근거 법령은 있으나 실제로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계획의 내용 및 특성상 평가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자료: 저자 작성

□ 그 밖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3개 계획의 경우 평가 대상으로 유지하되 계획수립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수행할 필요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해양환경종합계획은 법적 근거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단 한 차례도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
- 댐관리기본계획은 근거 법령개정에 따라 계획명이 변경되었으나 개정 이후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

표 3-22 | 평가대상으로 유지가 필요한 계획수립권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한 계획

구 분		계획명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평가대상으로 유지 필요 계획	단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은 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근거 법령 및 계획명 변경 이후 수행하지 않은 계획	댐관리기본계획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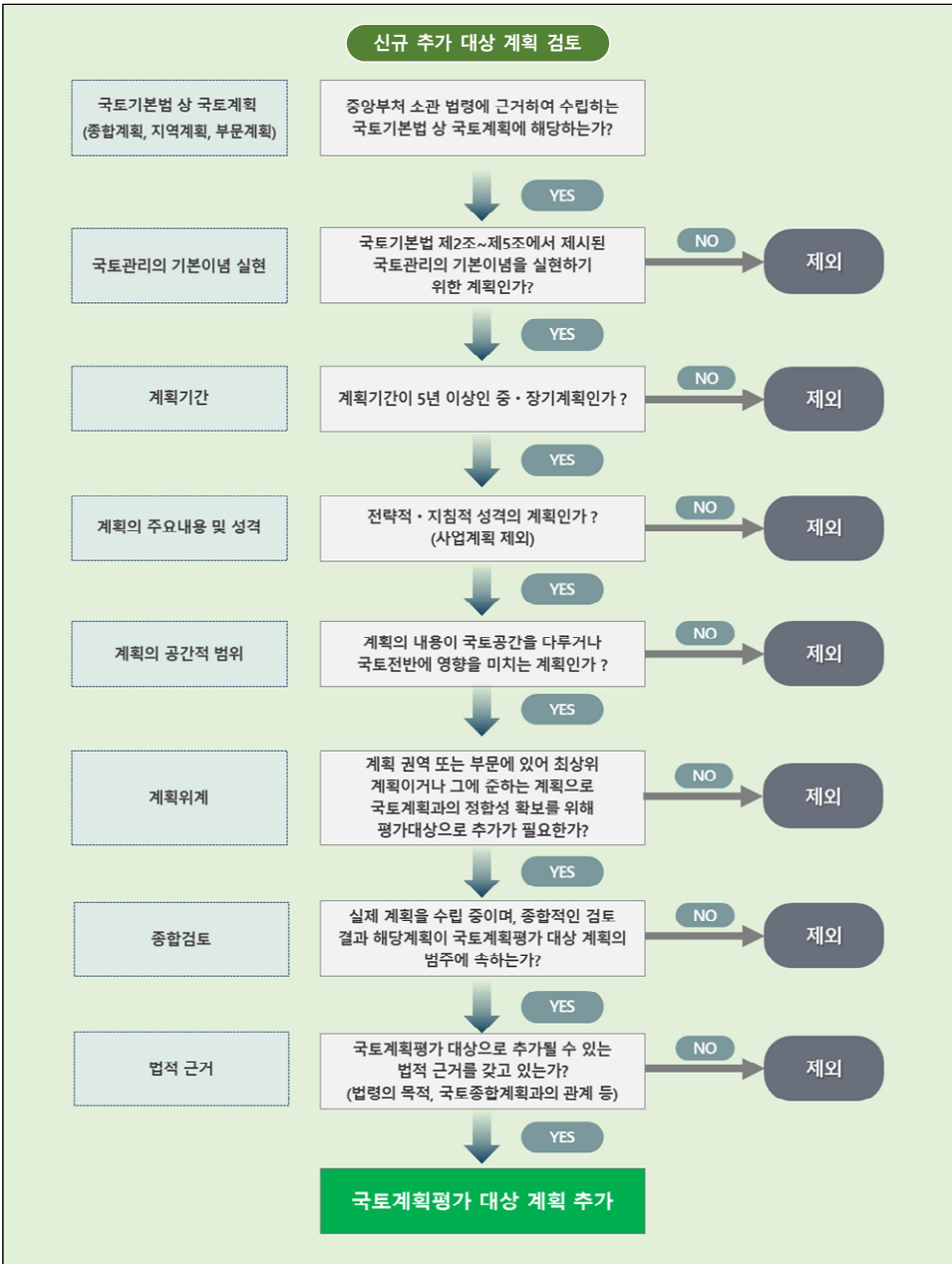
3.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추가

1) 평가대상 계획 추가를 위한 프로세스

□ 평가대상에서 추가될 필요가 있는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계획기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격, 계획의 공간적 범위, 계획 위계 및 종합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설정함

- 평가대상 계획 추가를 위한 프로세스는 민성희 외(2018)가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평가대상 계획 확대를 위해 제시한 프로세스를 활용함
- 국토기본법상 제시된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이 중앙부처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국토계획에 해당하는지 검토
-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인지 검토
- 정리된 국토계획 중 계획기간이 5년 이상인 중·장기계획을 선별하여 정리
-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격이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계획인지 검토하고 해당하는 계획을 선정
- 계획의 공간적 범위 측면에서 계획의 내용이 국토공간을 다루거나 국토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하는 계획을 도출
- 계획의 위계 상 계획 권역 또는 부문에 있어 최상위 계획이거나 그에 준하는 계획인지에 대해 검토하여 대상 계획을 도출
- 추가 대상 국토계획이 실제 계획을 수립 중이며,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으로 추가가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계획 목록 도출
- 최종적으로 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목적과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의 부합성, 대상 계획과 국토종합계획과의 관계 등 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하여 최종 선정

그림 3-8 | 평가대상 계획 추가를 위한 프로세스



자료: 민성희 외.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국토연구원. p.41.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평가대상 추가 계획 도출 방안

□ 평가대상 추가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은 [그림 3-9]와 같으며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되는 국토계획을 검토 대상으로 설정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균형발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 시설, 물류 시설, 농지, 수자원, 산림자원, 식량자원, 광물 자원, 해양수산자원, 자연생태계의 보전·관리, 국민의 삶의 질 등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국토계획을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설정(「국토기본법」 제3~5조)
 -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전체 국토계획 중 검토 범위를 좁히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국토계획, 평가대상 계획 제외에 따라 대체가 필요한 국토계획, 본 연구에서 조사된 부처별·부문별 국토계획, 새로운 분야의 국토계획 등 평가대상으로 추가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국토계획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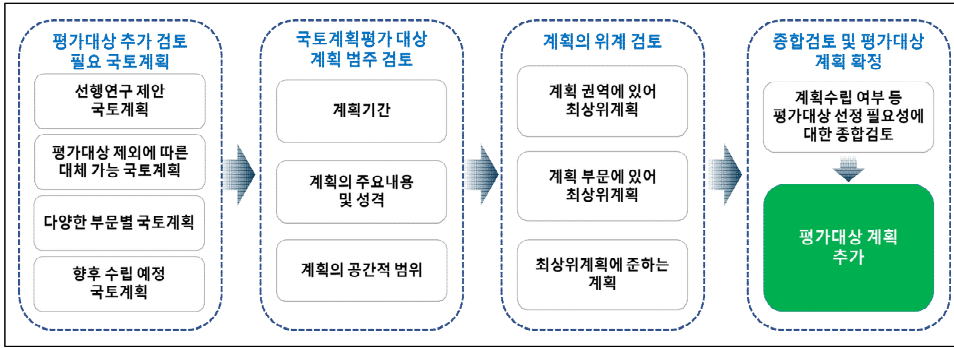
□ 다음은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토계획의 성격이 평가 대상 계획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수행함

- 검토 대상 국토계획의 계획기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격, 공간적 범위를 검토하여 평가대상 계획의 범주에 해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을 분류
 - 계획기간이 5년 이상인 중장기 국토계획을 분류
 - 계획의 주요 내용 및 특성을 검토하여 전략적, 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분류
 - 계획의 공간적 범위가 국토공간을 다루거나 국토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계획 분류

□ 검토 대상 계획의 위계가 최상위계획에 준하는지 검토한 이후 종합검토를 토대로 확정

- 계획의 위계 상 검토 대상 계획이 공간적 범위 및 부문에 있어 최상위계획이거나 그에 준하는 계획인지에 대해 검토함
- 최종적으로 실제 계획의 수립여부, 계획의 주요내용, 성격, 공간적 범위, 수립 방식, 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획을 확정함

그림 3-9 | 국토계획평가 대상 추가 계획 도출 방안



자료: 저자 작성

3) 평가대상 계획 추가를 위한 검토 목록

(1) 선행연구에서 선정된 국토계획

□ 평가대상 계획의 추가를 위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선정된 계획을 검토함

-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이후 평가대상 확대를 위해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어떠한 계획이 제안되었는지 확인 필요
- 민성희 외(2018)는 국토계획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8개 계획을 추가로 평가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제도에 반영되지 않아 해당 계획의 추가 가능성 검토 필요
 -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제안된 계획은, 지역발전5개년계획(現 지방시대 종합계획),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등임
-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8개 계획은 중·장기적 성격, 전략적·지침적 성격, 계획의

공간적 특성 및 광역성, 계획의 위계 등 평가대상 선정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신규 평가대상 검토 목록에 포함

표 3-23 |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평가대상 추가 검토 필요 국토계획

구 분	계획명
선행연구 제안 계획 (8개)	지역발전5개년계획(現지방시대 종합계획),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자료: 민성희 외.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국토연구원. p.49.

(2) 평가대상 제외에 따른 대체 가능 국토계획

□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선정

- 근거 법령 폐지로 인한 2개 계획, 실제 수립하지 않고 있어 장기적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2개 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도출함
- 이 연구에서 선정된 연안통합관리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4개 계획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부문 계획과 국토종합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국토종합계획과 제외가 필요한 계획 부문과의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대체 가능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연안통합관리계획은 폐지되었으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해양공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검토 대상 목록에 추가함
 - 연안이라는 협소한 공간개념을 해양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한 물관리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인 물관리기본 계획을 검토 대상 목록에 포함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은 산림교육종합계획,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과 함께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으로 통합 수립된 사례가 있으므로 대체 가능 검토 대상 목록에 추가함
-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은 실제 수립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획내용 및 성격이 비슷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목록에 포함

표 3-24 | 평가대상 제외에 따른 대체 가능 국토계획

구 분	계획명
대체 가능 국토계획 (4개)	해양공간기본계획 산림복지진흥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자료: 저자 작성

(3) 부처별·부문별 국토계획

□ 각 부처별 소관 법령에 근거한 부문별 국토계획을 평가대상 추가를 위한 목록에 추가하여 검토

- 2012년 국토계획평가제도 도입 이후, 기후변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빈집, 산업단지 등 각 부처별 소관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된 부문별 국토계획 추가에 대한 검토 필요
- 본 연구에서 조사한 부처별·부문별 국토계획 중 계획기간, 계획내용 및 성격, 공간적 범위가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획목록을 선정하여 검토
 - 국토교통부(14개), 해양수산부(6개), 환경부(5개) 등 31개 부문별 국토계획 검토

표 3-25 | 평가대상 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처별 부문별 국토계획

구 분	계획명
국토교통부 (14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건축정책기본계획,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경관정책 기본계획, 빈집정비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6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공간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1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1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환경부 ³⁾ (5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 재이용 기본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환경보건종합계획
산림청 (2개)	산림복지진흥계획, 산지관리기본계획

자료: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새로운 분야의 국토계획

□ 국토계획평가제도 도입 이후 새로운 여건 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제·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새로운 분야에서 수립 예정인 국토계획을 검토 대상 목록으로 추가

- 초광역권계획, 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공업지역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등 현재 근거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수립 예정인 6개 국토계획을 검토함

3) 환경부 소관 계획 중 환경보호 및 보전 부문 계획은 환경성 검토에서 평가대상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 추가 검토 필요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음

표 3-26 | 새로운 분야에서 수립 예정인 국토계획

구 분	계획명
새로운 분야의 수립 예정 국토계획 (6개)	초광역권계획(국토기본법) 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시대 종합계획(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초광역권발전계획(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업지역기본계획(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료: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국토계획평가 대상 추가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제안 국토계획(8개), 대체 가능 국토계획(4개), 부처별 부문별 국토계획(31개), 새로운 분야의 수립 예정 국토계획(6개)을 포함한 49개 국토계획 중 중복되는 11개 계획을 제외한 38개 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검토된 38개 계획목록을 본 연구에서 설정한 평가대상 신규 추가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신규 추가가 필요한 계획을 도출함
- 신규 평가대상 계획 선정기준은 계획기간, 계획내용 및 성격, 계획의 공간적 범위, 계획의 위계, 계획수립 여부 및 종합검토, 법적 근거 등의 순으로 적용함

□ 새롭게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38개 검토 대상 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은 14개 계획임

- 계획의 내용 및 성격의 측면에서 전략적, 지침적 성격이 아닌 4개 계획은 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 계획의 공간적 범위 측면에서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10개 계획은 평가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 계획의 위계 상 최상위계획이 아니거나 현재의 평가대상 계획 때문에 신규로 추가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3개 계획은 제외함

- 최상위 계획이거나 그에 준하는 상위계획임에도 실제 수립된(예정포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7개 계획은 제외함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국가인구감소 지역대응기본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4개 계획은 시군 또는 시도에서 제시한 전략 또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여 상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므로 평가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공간기본계획, 건축정책기본계획 등 3개 계획은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정 분야 또는 공간을 다루고 있어 평가대상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 따라서, 이 연구에서 새롭게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선정된 계획은 총 14개 계획임

-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초광역권계획,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14개 계획
- 다만,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14개 계획 중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등 3개 계획은 계획을 시·군 단위에서 수립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으로 선정 시 국토계획평가제도를 운영하는데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도·시군기본계획과 같이 계획을 시·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경우 실제 수립되는 계획의 수가 매우 많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제도 운영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표 3-27 | 신규 평가대상 계획 추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계획명	신규 평가대상 계획 추가를 위한 기준					
	계획기간	계획내용 및 성격	공간적 범위	계획의 위계	계획수립여부 및 종합검토	
	5년이상 중·장기	전략적 지침적	국토공간, 국토전반에 영향	상위계획	실제 계획 검토 및 평가대상 포함 적합성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YES	NO	-	-	-	
빈집정비계획	YES	NO	-	-	-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YES	NO	-	-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YES	NO	-	-	-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YES	YES	NO	-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YES	YES	NO	-	-	
대중교통 기본계획	YES	YES	NO	-	-	
환경보건종합계획	YES	YES	NO	-	-	
물 재이용 기본계획	YES	YES	NO	-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YES	YES	NO	-	-	
자원순환기본계획	YES	YES	NO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YES	YES	NO	-	-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YES	YES	NO	-	-	
산림복지진흥계획	YES	YES	NO	-	-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YES	YES	YES	NO	-	
산지관리기본계획	YES	YES	YES	NO	-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YES	YES	YES	NO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YES	YES	YES	YES	NO	
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YES	YES	YES	YES	NO	
초광역권발전계획	YES	YES	YES	YES	NO	
지방시대 종합계획	YES	YES	YES	YES	NO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YES	YES	YES	YES	NO	
해양공간기본계획	YES	YES	YES	YES	NO	
건축정책기본계획	YES	YES	YES	YES	NO	

계획명	신규 평가대상 계획 추가를 위한 기준								
	계획기간		계획내용 및 성격		공간적 범위		계획의 위계		계획수립여부 및 종합검토
	5년이상 중·장기		전략적 지침적		국토공간, 국토전반에 영향		상위계획		실제 계획 검토 및 평가대상 포함 적합성
공업지역기본계획	YES		YES		YES		YES		YES (시·군단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YES		YES		YES		YES		YES (시·군단위)
도시재생전략계획	YES		YES		YES		YES		YES (시·군단위)
초광역권계획	YES		YES		YES		YES		YES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YES		YES		YES		YES		YES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YES		YES		YES		YES		YES
경관정책기본계획	YES		YES		YES		YES		YES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YES		YES		YES		YES		YES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YES		YES		YES		YES		YES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YES		YES		YES		YES		YES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YES		YES		YES		YES		YES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YES		YES		YES		YES		YES
국가물관리기본계획	YES		YES		YES		YES		YES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YES		YES		YES		YES		YES

자료: 민성희 외.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국토연구원. p.49.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소결

□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방법에 의해 도출된 평가대상 계획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는 14개 국토계획을 선정함

- 계획기간, 계획내용, 공간적 범위, 계획의 위계, 종합검토 등의 단계적 검토 과정을 통해 평가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14개 국토계획을 도출
- 다만,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지만 시·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3개 계획은 제도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를 고려하여 평가대상 추가 계획으로 선정할 필요
 - 공업지역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실제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시·군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가대상 계획으로 선정 시 제도운영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전 국토에 걸쳐 도시 내 특정공간(공업지역, 도시재생지역, 농촌공간)의 미래 발전방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

표 3-28 | 국토계획평가 대상 추가 계획

구 분	계획명
평가대상 추가 국토계획 (14개)	공업지역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초광역권계획,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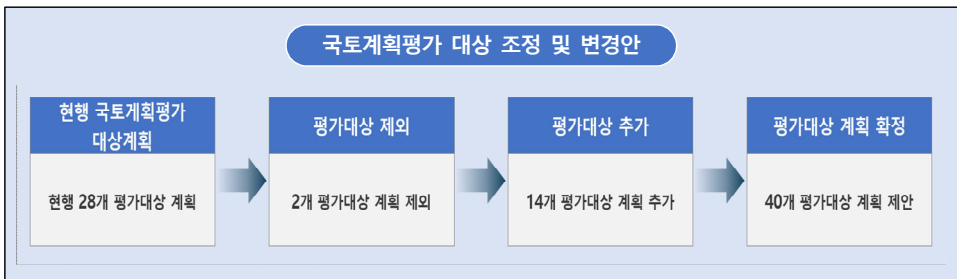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4.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안 제시

□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현행 28개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2개 계획과 추가가 필요한 14개 계획을 반영하여 총 40개 계획을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안으로 제시함

- 연안통합관리계획은 근거 법인 「연안관리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제외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며, 근거 법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 예정 이므로 제외
- 국토계획평가 대상 추가 계획은 공업지역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초광역권계획,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 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14개 계획임

그림 3-10 | 국토계획평가 대상 조정 및 변경 절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1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안

구분	계획명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유형)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계획)	국가기간망교통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관리기본계획
부문별계획 (12개 계획)	주거종합계획, 농어촌 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구분	계획명
종합계획·지역계획 (7개 유형)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이하 추가) 초광역권계획,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기간시설계획 (16개 계획)	국가기간망교통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관리기본계획 (이하 추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략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부문별계획 (17개 계획)	주거종합계획, 농어촌 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제외),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이하 추가) 공업지역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자료: 저자 작성

2) 평가대상 추가 국토계획의 주요 내용 및 근거

□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근거한 공업지역기본계획

- 공업지역기본계획은 도시 내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수립되는 시군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며, 동법 제6조에서 공업지역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2021년 1월 5일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업지역이 있는 도시(시·군)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지역산업 보호·육성,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건축물의 밀도계획 기본방향, 지원기반시설, 환경관리방향 등으로 구성
-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산업구조 변화 및 주변 환경 악화 등으로 노후·쇠퇴된 공업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평가대상 계획으로 추가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는 관할 공업지역에 대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4조에 따른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① 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산업·인구·건축물·토지이용·기반시설·공업지역 면적 등 활용실태·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3.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4. 지역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등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5.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건축물 권장용도(업종계획을 포함한다),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기본방향
 8.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9. 환경관리방향
 10. 개략적인 사업비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업지역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7조에 근거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 농촌지역도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2023년 3월 28일 제정되었으며,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임
 -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
 -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 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 농촌공간계획은 동법 제5조에 의해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추가함
- 또한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 인구감소 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농촌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라는 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평가 대상으로 추가 가능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3.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4.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농촌특화지역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8.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9.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
10.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농촌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2.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한 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시·군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5년 단위로 정비하는 계획

-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계획임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쇠퇴진단,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개선·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동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추가 가능
-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도시 공간을 재활성화하는 국가적 차원의 공공이 지원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추가 필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 5의2.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 이하 생략 -

□ 「국토기본법」 제6조 및 제12조의2에 근거한 초광역권계획

- 2022년 2월 3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
- 초광역권계획의 주요 내용은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발전전략,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 분담,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 시설 구축, 산업 발전 및 육성, 문화 관광 기반의 조성,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 등으로 구성
- 현재 초광역권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국토기본법」 제7조에서 초광역권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합성 확보 측면과 계획의 주요 내용 및 특성상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추가함

「국토기본법」 제12조의2(초광역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라 한다)은 초광역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2. 초광역권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3. 초광역권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초광역권의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5. 초광역권의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초광역권의 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초광역권 문화·관광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초광역권의 상호 기능연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하 생략 -

「국토기본법」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①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근거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⁴⁾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계획

- 2018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이 수립·고시되어 계획이 이행 중임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 차별화된 발전전략, 개발사업과 입주기업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타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지만, 국토종합계획에는 우선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평가대상 추가 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하 생략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정의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⁵⁾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며, 동법 제4조에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평가대상으로 추가

– 2019년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이 수립·고시되어 계획이 이행 중임

-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 단계별 추진전략, 관련 법·제도의 정비, 추진체계, 거버넌스 체계, 운영 및 관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국가시범도시 지정·운영 등으로 구성(국토교통부, 2019b)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간생략〉

-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은 기반시설⁶⁾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대한민국 기반시설 관리의 종합적 추진방향을 제시(국토교통부, 2020a)
 - 2020년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0~2025)이 수립·고시되어 계획이 이행 중임
-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기본목표와 방향, 관련 법·제도의 개선, 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
- 동법에서는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이라는 국토관리 기본이념과 전 국토에 걸쳐 기반시설을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한 계획의 목적이 정합하다는 점에서 평가대상으로 포함 가능
 - 「국토기본법」 제10조에 제시된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상하수도, 재해 방제,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어 평가대상 추가에 대한 근거 제시 가능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8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3. 기반시설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력의 양성
5.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6.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필요한 기반시설 유형별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등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 이하 생략 -

6)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 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정의

□ 「어촌·어항법」 제4조에 근거한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

-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은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어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해양수산부, 2020b)
 - 2020년 제3차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2020~2024)이 수립·고시되어 계획이 이행 중임
-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어촌·어항의 중장기 정책방향, 개발 및 관리, 어촌·어항의 종합개발, 어촌·어항 재생사업, 어촌의 교통편의 증진 등으로 구성
 -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개발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법 제6조 어촌종합개발계획과 제19조 어항개발계획 등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동법에서는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이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평가대상 추가 필요
 - 전국의 74개 시군구 어촌, 2,299개 어항을 공간적 범위로 다루고 있음(해양수산부, 2020b)
 -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초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에서 평가대상 포함 가능
- 또한 「어촌·어항법」의 목적이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인 균형적 국토관리와 정합하므로 평가대상으로 추가함

「어촌·어항법」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장기 정책방향
2. 어촌·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어촌·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하 생략 -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근거한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략계획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략계획은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중심이 된 산업단지 혁신 추진을 위해 1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계획(관계부처 합동, 2022)
 - 2022년 제2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2022~2031년)이 수립·고시됨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별 입지 현황 및 진단, 산업단지 혁신 방향 설정, 산업단지 혁신 전략 기본방향 및 세부과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동법 제9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3에 따르면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평가대상 포함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10년 단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 입지현황 및 가치사슬에 의한 산업단지 간 거점 및 연계 구조에 관한 사항
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노후도 진단
4.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5. 경쟁력강화사업의 연도별 확대 계획
6.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략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3. 6. 9.>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 이하 생략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성장유망산업의 집적 및 연계를 통해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임(산업통상자원부, 2019)
 - 제3차 기본계획(2014~2018)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제4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 계획이 수립·고시됨(2019~2023, 중기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지역별 성장유망산업 현황분석을 토대로 지역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산업의 집적 및 연계강화와 산업입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하고 있음(산업통상자원부, 2019)
- 동법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평가대상으로 추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4. 1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이하 생략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2011. 4. 14., 2013. 3. 23., 2018. 3. 20., 2023. 6. 9.>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 이하 생략 -

□ 「경관법」 제6조에 근거한 경관정책기본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중임(국토교통부, 2019a)
 - 2019년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이 수립·고시됨
-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써,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계획임(국토교통부, 2019a)
 - 경관정책의 중기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 경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계획의 성격을 지님
-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토경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 동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에 부합되도록 정합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서 평가대상으로 추가
 -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함

「경관법」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경관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경관과 관련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④ 경관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으로 범부처⁷⁾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

- 2020년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고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시책을 포함(관계부처 합동, 2020)
- 동법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국토종합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의 목적이 전국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평가대상 포함 가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20. 2. 11.>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 2의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4의2.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자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국무조정실(총괄), 농식품부(간사), 해수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중소기업부 등 21개 부처·

□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기후변화,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물관리 계획의 필요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10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관계부처 합동, 2021)
 -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수립·고시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의 물관리 비전과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기본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 및 이행평가 체계 등을 구체화하는 계획임(관계부처 합동, 2021)
 - 물 관련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수립하는 통합형 계획이자, 각 분야별 물관리 계획을 아우르는 물 관련 국가 최상위계획의 성격을 지님
- 동법에서는 타 계획과의 정합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등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법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정합하므로 평가대상으로 포함 가능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5.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부담 원칙·기준
8. 물관리 예산의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하 생략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계획으로서 화석연료 의존적 사회구조를 탈피하고자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임(관계부처 합동, 2023)
 -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2023~2042)이 최초로 수립·고시
- 본 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함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 2023년 3월 14일 시행된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평가대상으로 포함 가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사항

- 이하 생략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적용범위) (중간생략) ③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계해야 한다.



CHAPTER 4

결론

1. 연구 요약 및 결론 97
2. 평가대상 계획 관련 제도 개선방안 99

04 결론

1. 연구 요약 및 결론

- 국토계획평가제도는 대상 계획에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국토종합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를 지님
-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 조정 등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 없이 28개 계획을 대상으로 제도 유지
- 효과적인 제도운동을 위해서는 현행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제외가 필요한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여건 변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에 적합한 계획을 추가하는 등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맞추어 국토계획평가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안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
-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성과로 합리적 계획인구 설정 유도,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도시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유도 등을 확인하였으며, 운영상 한계로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관리 미흡, 국토계획 간 연계 부족, 절차적 부담 증가 등을 도출
-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이 계획 자체의 질적 제고, 국토관리 기본이념 내재화, 계획 간 연계성 강화 등 국토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
-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안 도출을 위한 연구방법은 국토계획 수립현황 조사, 평가대상 계획 제외 검토, 평가대상 계획 추가 검토, 평가대상 계획 확정 등의 과정으로 설정
 - 국토계획 수립 현황 조사는 문헌조사를 수행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에 근거한 계획을 조사·정리함
 - 종합·지역계획을 비롯하여 부처별 소관 법령에서 제시하는 부문계획을 조사·정리함
 - 현행 28개 평가대상 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계획평가 수행 여부, 평가대상 계획의 법적 근거, 대상 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대상 계획 제외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 설정을 통해 2개 계획을 제외 대상으로 확정함
 - 평가대상 계획 추가를 위해서는 38개 계획을 대상으로 계획기간, 주요 내용과 성격, 공간적 범위, 계획위계 및 종합검토 과정을 통해 14개의 추가 계획을 확정함
 -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40개 평가대상을 조정 및 변경안으로 확정하고, 추가된 대상 계획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제시함
 -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제도적 근거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나아가 새롭게 선정된 평가대상 계획에 국토관리 기본이념 내재화 및 질적 제고를 비롯하여 국토계획 간 연계체계 강화 등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이 연구는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안 마련을 위해 설정한 기준에 대해 일부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연구진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음
 - 향후 연구에서는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을 강화할 필요

2. 평가대상 계획 관련 제도 개선방안

□ 평가대상 계획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근거 법령의 개정 및 폐지와 같은 법적 근거의 변화는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현 제도에서는 평가대상 계획이 최소 5년을 주기로 계획을 수립·변경한다는 특성상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 따라서, 평가대상 계획이 근거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없이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확인할 필요

□ 여건 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이 평가대상으로 적합한지 검토하고 추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계획평가제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아 제도운영 이후 11년간 새로운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추가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여건 변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되는 국토계획이 평가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토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모든 평가대상 계획이 국토계획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 본 연구 결과, 평가대상 계획 중 일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계획수립권자의 제도 인식 부족으로 국토계획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계획의 계획수립권자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대상 계획 확대 시 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 도시·군기본계획과 같이 1개 종류의 평가대상 계획이지만 시·군단위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경우 실제 국토계획평가 수행 건수가 매우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시·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계획 중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적합하여 추가될 경우 제도운영 상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관련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전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평가 절차 간소화 및 평가대상 계획 확대

-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계획을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관리 유도 필요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도시의 경우 국토계획평가 정책 영역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을 평가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 필요

참고문헌

REFERENCE



【인용문헌】

- 국토교통부. 2012~2022. 국토계획평가 검토 위탁 연구 연차보고서.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22. 2022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연구원. 2021.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 세종: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 2023. 국토계획평가제도 및 국토계획평가센터 운영 실적(내부자료). 세종: 국토연구원
- 권영섭·김선희·손은영·배준구·이주일·이동우. 2016.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 김명한. 2020.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및 시사점. Working Paper: 20-12. 세종: 국토연구원.
- 민성희·김선희·남기찬·박종순·박정호.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기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 민성희·이용우·이순자·김동근·차은혜.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송우경. 20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월간 KEIT 산업경제. vol.298. 7~16. 세종: 산업연구원
- 이용우·이원섭·안홍기·박정호·이지원. 2011. 국토계획평가 시행방안 연구. 과천: 국토해양부.

【법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건축기본법(법률 제18339호, 2021. 7. 27.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경관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골재채취법(법률 제18552호, 2021. 12. 7.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일부개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33호, 2022. 12. 27. 일부개정)

공항시설법(법률 제19373호, 2023. 4. 18. 일부개정)

관광기본법(법률 제17703호, 2020. 12. 22. 일부개정)

관광진흥법(법률 제19246호, 2023. 3. 21. 일부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제17942호, 2021. 3. 16. 일부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법률 제18759호, 2022. 1. 18. 일부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54호, 2021. 6. 15. 일부개정)

국토기본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국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83호, 2023. 3. 28.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527호,
2021. 11. 30. 일부개정)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43호, 2019. 8. 27. 일부개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86호, 2023. 3. 28. 제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51호, 2023. 10. 24.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676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50호, 2022. 11. 15. 일부개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도로법(법률 제19677호, 2023. 8. 16. 일부개정)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2018. 12. 21,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일부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12호, 2022. 12. 27. 일부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도시철도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58호, 2022. 6. 10. 타법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타법개정)

문화기본법(법률 제18379호, 2021. 8. 10., 일부개정)

물관리기본법(법률 제17841호, 2021. 1. 5. 일부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79호, 2023. 8. 16. 일부개정)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19382호, 2023. 4. 18. 일부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타법개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906호, 2022. 6. 10. 일부개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18호, 2020. 5. 26. 일부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9385호, 2023. 4. 18. 일부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44호, 2022. 11. 15. 타법개정)

산림기본법(법률 제1911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9496호, 2023. 6. 20. 일부개정)

산업융합 촉진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산지관리법(법률 제18263호, 2021. 6. 15. 일부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132호, 2022. 12. 27. 일부개정)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8907호, 2022. 6. 10. 일부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수도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9012호, 2022. 10. 18. 타법개정)

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19775호, 2023. 10. 24. 일부개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69호, 2023. 1. 3. 일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전부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 7. 25. 제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911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법률 제1904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어촌·어항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91호, 2022. 6. 10.
일부개정)
연안관리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온천법(법률 제19028호, 2022. 11. 15. 일부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84호, 2022. 6. 10. 일부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48호, 2021. 7. 27. 일부개정)
자연공원법(법률 제19361호, 2023. 4. 18. 일부개정)
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19012호, 2022. 10. 18. 타법개정)
자원순환기본법(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주거기본법(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법률 제18563호, 2021. 12. 7. 일부개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법률 제18564호, 2021. 12. 7. 일부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지하수법(법률 제19170호, 2023. 1. 3. 일부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법률 제19006호, 2022. 10. 18. 일부개정)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93호, 2023. 4. 18. 일부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토양환경보전법(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항공사업법(법률 제18565호, 2021. 12. 7. 일부개정)
항만법(법률 제19140호, 2022. 12. 27. 일부개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하수도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일부개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57호, 2021. 1. 5. 타법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19145호, 2022. 12. 27. 일부개정)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9013호, 2022. 10. 18. 일부개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환경보전법(법률 제17855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19173호, 2023. 1. 3. 일부개정)

【법정계획】

국토교통부. 2019a.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9b.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20a.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20b.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세종: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 2018.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합동. 2020.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관계부처 합동. 2022. 제2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2022~2031).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 2023.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 서울:대한민국정부

산림청. 2017.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2018~2022). 대전: 산림청.
산림청. 2023. 제2차 산림복지진흥계획(2023~2027). 대전: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2019. 제4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19~2023).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2021.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홍성:충청남도.
해양수산부. 2020a.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 세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20b. 제3차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2020~2024). 세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20c.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 세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21.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 세종: 해양수산부.
환경부. 2021.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세종: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담당자 전화 인터뷰(2023년 8월 1일)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담당자 전화 인터뷰(2023년 8월 2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담당자 전화 인터뷰(2023년 8월 1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담당자 전화 인터뷰(2023년 8월 1일)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담당자 전화 인터뷰(2023년 8월 1일)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담당자 전화 인터뷰(2023년 8월 2일)

SUMMARY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ial Plan Assessment : Focusing on the adjustment and change of the assesment target plan

Kim Myung Han, Hong Sa Heum, You Hyun Ah

Key words: National Territorial Plan, National Territorial Plan Assessment,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Territorial Plan Assessment system lies in reflecting the basic ideology of national territorial management in the target plan, and encouraging the assurance of mutual consistency with upper-level plans, such as the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Territorial Plan Assessment, implemented since May 2012, various system improvements, including modifications to assessment criteria,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the system continues to be maintained for 28 plans with no adjustments or changes made to the assesment target plan.

To ensure effective system operation, it is critical to review assessment target plans that require exclusion among the current 28 plans and to make adjustments and changes to the assessment target plans. This includes incorporating plans that are suitable for assessment target among the newly established national territorial plans due to changes in conditions.

Therefore,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with the purposes of (1) suggesting

proposed adjustments and changes to the assessment target plans to enhance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ial Assessment system in response to new changes in conditions, and (2) providing measures for improving related systems.

This study found that the indu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rational planned population, the secure of mutual consistency with upper-level and relevant plans, and the promotion of plans tha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cities and regions are outcomes resulting from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ial Assessment Plan system. Furthermore, operational limitations were identified, encompassing inadequate management of the assessment target plans, insufficient coordination between territorial plans, and a rise in procedural burdens.

Next, the selection of the target plan for the National Territorial Assessment is deemed crucial in this study. This process enables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fostering sustainable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by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plan itself, internalising the fundamental ideology of national territorial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the connections among plans.

The research methodology for deriving the proposed adjustments and changes to the assessment target plans was structured as a process. This involved an investigation into the establishment status of the National Territorial Plan, a review of the assessment target plans requiring exclusion as well as those necessitating inclusion, and the final confirmation of the assessment target plans.

Following a review process to remove assessment target plans from the existing 28, two plans were found to be excluded. The existence of a national territorial assessment,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assessment target,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rget plans were among the factors taken into account in this evaluation.

For the inclusion of assessment target plans, an additional 14 plans were included, determined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ing process considering factors such as the planning period,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spatial scope, and planning hierarchy.

Finally, the paper determined 40 assessment targets as the proposed adjustments and changes by synthesising research findings. It also suggested the main contents and a legal basis for the additional target plans.

By leverag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anticipated that there will be amendments to the legal and systemic foundat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ial Assessment Plan system.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nalisation of the basic ideology of national territorial management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newly selected assessment target plans will occur. Additionally, the findings will contribute to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with a strengthened interconnection among the national territorial plans.

This study has limitations as there are qualitative decisions to be made based on set criteria for preparing the proposed adjustments and changes to the assessment target plans. It also, cannot entirely eliminate the subjective opinions of the researchers. Therefore, in future studies, it is essential to enhance the research methodology to ensure objectivity during the process of adjusting and changing the assessment target plans.

수시 23-14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연구진 김명한, 홍사흠, 유현아

발행인 심교언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발행 2023년 8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대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팩스 044-211-4760

가격 비매품

I S B N 979-11-5898-879-1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3,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십시오.

김명한, 홍사흠, 유현아. 2023.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ial Plan Assessment :
Focusing on the adjustment and change of the assesment target plan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성과와 평가대상 계획의 중요성

제3장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

제4장 결론



KRIHS 국토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FAX (044) 211-4760



공공누리



공 권 저 작 품 자 유 이 용 허 락

